

제30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7월26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개(쌍용자동차 해고자의 연이은 사망 문제와 삼성반도체의 직업병에서 비롯된 산업재해제도 개선 관련)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의 건
2. 업무보고(계속)
 - 가. 고용노동부
 - 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다. 중앙노동위원회
 - 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사된 안건

1. 2개(쌍용자동차 해고자의 연이은 사망 문제와 삼성반도체의 직업병에서 비롯된 산업재해제도 개선 관련)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의 건 1
2. 업무보고(계속) 11
 - 가. 고용노동부
 - 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다. 중앙노동위원회
 - 라. 최저임금위원회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오늘의 의사일정이 새로 추가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던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연이은 사망 문제와 삼성반도체에서 생긴 직업병 문제 등에 대한 특위 구성에 대해서 의논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 차원에서 이 특위 구성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개(쌍용자동차 해고자의 연이은 사망 문

제와 삼성반도체의 직업병에서 비롯된 산업재해제도 개선 관련)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의 건

(09시37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쌍용자동차 및 삼성반도체 문제로 야기된 직업병과 관련해서 산업재해 제도개선과 관련한 2개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서 쌍용자동차의 연이은 자살 등의 사망 문제, 삼성반도체공장에서의 백혈병 등 직업병 발생 문제 등 산업재해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고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의견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쌍용자동차 및 산업재해 제도개선 관련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그간에 새누리당의 김성태 간사님하고 죽 논의를 해 왔습니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왜 이런 2개의 소위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에도 동의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쌍용자동차는 2009년도 정리해고로 인해서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의 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2400명이 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리해고의 문제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저하하고 특히 쌍용자동차의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하면서 기업이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당시에 이 쌍용자동차 문제는 충분히 노사 간에 정리해고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이런 파국적인 상황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22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공동체, 우리 사회, 국가가 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 특히 무급휴직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회사가 복직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또 정리해고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조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일정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방기하다 보니까 계속 죽음이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라도 나서서 정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해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정말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아보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재해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직업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이 직업병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나, 이 질병의 인과관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입증의 책임을 당사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내가 일을 하다가 직업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입증의 책임을 본인이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일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내가 삼성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삼성반도체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백혈병에 걸린 원인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을 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산업재해의 문제는 대부분 국가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반도체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도 정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밝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정말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고 제도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쌍용자동차나 산업재해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

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최봉홍 위원 쌍용자동차 문제나 백혈병 삼성 문제는 전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물론 방금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인 이상 산업현장에서 질병이 생기면 그것을 산재로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하든지 간에 정부나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쌍용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도 한번 느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있으면서 쌍용자동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을 면담을 하겠다 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노동위원장이 결원이 생겨 가지고 제가 그걸 위임을 받아서 급속노조의 기획실장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 그 당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당사 앞에서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2시에 나오니까 본인은 없고 앞에 쌍용자동차 봉고차가 와 가지고 ‘새누리당 표 찍지 마라’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 이름을 대면서 ‘왔느냐?’ 하니까 오전에 다녀갔다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에 올라가 가지고 ‘어디를 만나고 갔느냐?’ 했더니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사에 올라가서 ‘누가 왔느냐?’ 물었더니 직능국에다가 비정규직 개선 법안을 던져 놓고 그냥 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쌍차에서 온 친구들한테, 5명입니다, 우중에 비웃을 입고 떠드는데 ‘당신네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냐, 안 그러면 여기 와서 불 지르는 거냐,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와 가지고 선은 어떻게 후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 가지고 표 찍지 마라 그런 판국에 누가 도와주겠느냐, 그렇게 전해라’ 제가 그러고 헤어진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 경험담에 의하면 옛날에 6·29 난

뒤에 부산 양산에, 그 당시 권영길 위원장이 지휘하는 민노총이 공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당시 민주노총이 처음 생겨 가지고, 주식회사 동진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문제인 대표가 변론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노사 문제가 바깥으로 비화가 돼 가지고, 정치 문제화가 되는 바람에 그 블랙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회사는 나중에 정리를 해 버렸고, 직원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다른 회사에 취업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노사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쌍차 문제도 볼 때에 현재 쌍용자동차에는 안에 남았던 조합원들이 자기끼리 뭉쳐 가지고 노조를 따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노위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 노조와 노조 간에 그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환노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새로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누리당에 온 사람들은 김성태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선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조사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끌고 가면……

지금도 보십시오. 저는 알기로 비공개회의로 알고, 듣고 왔습니다. 여기 방송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안을 냈는데 새누리당이 무조건 반대를 했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는 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소임이 청렴을 위주로 양심에 의해 가지고 국익을 위해 한다면, 쌍용차가 지금 중국에 매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 다 뺏기고 빈껍데기 가지고 지금 인도 기업이 흡수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판국에도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지금 회계 조작이 큰 안으로 나오는데 그 회계 조작을 실사를 한 조사 내용이나 이런 문제도 아직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공연히 따라 나와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쌍차 문제나 이런 문제도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나간다면 정치 문제화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 의논은 안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반대 말씀을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산재 문제도 그렇습니다. 산재 문제가 산재보험법이 처음 생기면서 제가 전직으로

있던…… 산재보험이 생기기 전에 산재를 우리끼리 했었습니다. 그걸 빼앗아 갔는데 빼앗아 갔지만 아직까지,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 그 당시 적용시키던 데는 적용시켜 주고 아직까지 산재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도를, 지난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가지고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 현장 절차를 이루지 못하고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산재를 아직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실질 회사도 큰 책임이 있는 걸로, 뭐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역학 조사에서 잘못 나왔던 잘 나왔던 간에.

삼성은 우리나라 제1의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노동자는 자기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안 해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새로이 한번 처음부터, 이때까지 있는 선입견을 다 버리고 새로이 시작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 우리 19대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구성에는 아직까지 반대고, 환노위 차원에서 회사를 부르든지 역학조사했던 팀을 부르든지, 불러 가지고 거기서 면밀하게 사전지식을 충분히 똑같이 가지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응했으면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논의는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의를 아주 길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전체 의사가 비공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특별히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고요. 앞으로는 중요한 모임에 대해서 공개 여부도 여야 간 사담께 여쭙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제가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남다르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와 관련된 내용이 죽 진행이 되고, 오늘 아침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 두 장 정도로 된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예.

○한정애 위원 자료를 받으시는 동안 제가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연구조사 결과가 나온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2009년에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OECD국가의 산업재해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해서 우리나라는 21개 회원국 가운데서 사고·사망률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해서 1 대 29 대 300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재 사망자 1명이 나올 때는 중대재해가 29건 정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300건 정도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비율적으로 맞다라고 봐 지는데, 우리 사고·사망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산재 규모는 지금 굉장히 작게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산재 은폐, 공상 처리 이것들이 많다는 얘가지요. 어쨌든 우리 경제 규모는 12위 정도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는 있지만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역시 2010년 기준으로 보면 17조에 달해서 규모만 해도 엄청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산업재해가 국가와 기업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서 기업의 위험 수준을 좀 낮추기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 지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감독이 아주 미약하고 또 발생했을 때의 처벌 역시 미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도 기업 경쟁력임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하게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또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첫 단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 드리고, 이를 위한 산재소위 구성을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재소위에서는 특정한 기업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현행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 방안 그리고 산재보상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도를 개선해 내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산재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했고 거기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증명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근로복지공단이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오히려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노동자로 하여금 증명 책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제도개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한 한 조항인 제125조4항의 폐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산재보험료 부담 비중을 일정 부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선 논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부담 비중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임의가입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인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입을 하는 것도 본인 부담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해당 종사자들의 10% 정도만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특수형태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건강보험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죽음이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도 미래 한국 사회에서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절박한 문제이다, 해당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산재소위가 구성이 돼서 이러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정에 위원님 아주 준비를 많이 해 오셨군요. 혼자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뒤에 이름도 같이 써 냈는데, 같이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의를 얻으신 거예요?

○한정에 위원 같이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주동적으로 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용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교 위원 원래 심상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실 때는 쌍용차 문제하고 삼성 관련 문제를 했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오셨는데, 저는 이런 견해가 맞다고 보고요.

쌍용차 문제도 정리해고제 일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명칭에 대해서 개별 사업장을 명칭으로 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대, 19대 소위 구성 현황들을 죽 봤습니다. 지금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등을 보면 대체로 각 위원회 별로 한 3개의 소위원회를 둡니다. 그리고 18, 19대 섞어서 죽 자료들을 보면 정원이 28명인 경우에도 소위가 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고자 하는 소위가 2개나 더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 인원이 15명인데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소위원회 구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한다면 국회상임위정수에관한규칙을 바꿔서 먼저 저희들 위원 수를 줄여주는 게 맞다고 보고, 통상적으로 지금 15명이면 보통 관례적으로 2개 정도의 소위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3개 소위를 구성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정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정수를 늘린 다음에 소위를 만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감사합니다.

워낙 이쪽 위원회에 지원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정수가 조정됐는데, 정수를 늘리면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서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원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각 당이 본인 의사에 기초해서 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언하실 분……

은수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방금 서용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역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 논의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제안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서 배포를 좀……

○위원장 신계륜 예,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예, 배포해 주시고요.

우선 두 분 위원님의 우려나 걱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최봉홍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 기업의 노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왜 이 문제가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2646명에 대한 해고가 일어났던 당시 현재의 경영진이 아니라 법정관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상태에서 사실은 회계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정리해고가 결정됐고 그 이후에 마힌드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주체가 사실은 정부 및 그 당시 관련자까지로 굉장히 확대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 당시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의 근거를 주셨던 파산법원 부장판사 고영한 판사님께서 마침 대법관후보자로 인사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따르면, 그 질문에 대해서 고영한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까지 모두 다 해고되지 않도록 껴안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정말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이 질문이 뭐였느냐면 회계 조작 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때 2009년 정리해고가 결정되기까지는 회계 조작 문제가 사실은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제기된 ‘이게 회계 조작이 아니었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시 정리해고의 근거, 그러니까 회사 측의 회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 부장판사께서 대법관후보자 청문회에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개별 기업의 노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이상으로 정부나 혹은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한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쌍차소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서용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환노위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수 문제나 이런 것은 저는 향후에 어떻게 절차가 될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의 삶과 안녕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그러면 그 이후로 할 것인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심분 고려해 주시고, 저희 환노위원들이 더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이 많은 소위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 제안서를 그냥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국내 굴지의 완성차 회사인 쌍용자동차는 2646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은 후 대한민국 다른 어느 곳에서도 사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노동자와 그 가족 22명의 영정이 대한문 앞 콘크리트 바닥 위 분향소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시 해고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사회와 철저히 괴리된 채 생사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고, 언제 또다시 분향소 영정이 늘어날지 모릅니다. 만약 스물세 번째 영정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저희 국회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적 사명을 방기할 수 없고, 특히 18대 국회가 한진중공업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 보자고 노력했

던 것처럼 19대 국회 역시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서용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리하고 일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정리해고는 노동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는데, 그리고 경영에 대한 참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만 경영상의 부실함에 따른 위험을 해고로써 자기가 감당하는, 권리나 책임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재검토까지도 포함해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쌍용차 문제 해결 및 정리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고, 사실은 저는 이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위원회의 목적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의 원인 등에 대한 진실 규명, 즉 현안에 대한 진실 규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정리해고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어쨌든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제반 조치 등을 추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 및 운영은 참조를 하시고요, 이것은 참조한 저의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고요, 사실은 어제, 그제 환경부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께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 혹은 노동부와 관련해서도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데 환경부 업무 보고 때와 같이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권을 세울 수 있는가가 사회적으로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19대 국회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사회 새로운 희망을 열어 가고, 이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또한 스물세 번째 영정이 대한문 분향소에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앞으로 여야 간에 한 분씩만 짧게 발언하라고 제가……

○이종훈 위원 저도……

○위원장 신계륜 그러시면 말씀하시고 나서 이종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이 소위 구성 관련해서 최봉홍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산재나 쌍용차 관련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소위에서보다는 공청회나 청문회 방식,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하자 이런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서용교 위원님 말씀은, 하나는 업무상 여기 환노위가 부담이 크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명칭에서 개별 기업이 들어가기보다는 명칭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 그러니까 현재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형식이나 명칭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소위 자체가 구성되는 것만으로 어떤 것을 바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위에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아니면 소위가 아니라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재 관련된 건 그리고 쌍용자동차 관련된 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환노위 전체의 부담이 큰 문제는 아마 전체회의로 갔을 때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봉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소위보다는 환노위 전체회의나 공청회나 청문회 방식, 그보다는 소위가 훨씬 더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 저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걸 하나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정수 확대 문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위원님들의 선호, 의지하고 관련된 어 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사항일 것 같기는 한데, 우선 하여튼 명칭에 쌍용자동차라는 기업명을 넣는 게 부담스럽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여기에서 제대로만 만들어져서 소위를 구성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절충점을 찾아서 구성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문제는 형식이 나 명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그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냐 이것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위원** 쌍용차소위하고 삼성백혈병소위하고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모 라디오방송사 객원 해설위원이었는데 한진중공업 사태 터졌을 때 저한테 해설을 부탁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한진중공업이라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공장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게 거기에 있다, 지나갔지만 쌍용차 문제도 대공장 구조조정의 문제였고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는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대공장의 구조조정이란 주제를 놓고 보다 전문가들,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국회 이런 데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할지 해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한두 개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도적 접근방법을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공장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어서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저희 환노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특정 기업보다는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스물두 분이 목숨을 이미 잃으셨고, 앞으로 이 문제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안절부절 하는 상황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쌍용차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진솔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문제는 노동에서 나타났지만 해법은 노동을 떠나서도 많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해법, 실효성 있는 해법은 단순히 노동 문제, 그러니까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나 등등의

모든 문제가 단순히 노동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신차 개발에 성공하고 정상화를 하느냐라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까지 우리가 해법을 제시해야만 진정 쌍용차를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의 장을 연다면 저는 환노위뿐만 아니라 지경위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쌍용차 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백혈병소위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자칭 초우량 글로벌 기업에서 어쨌든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1심이기는 하지만 일부 근로자가 산재로 판정받은 그런 것에서는 삼성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1년에 제가 알기로 1000명에 육박하는 산재 사망자 수가 있고요, 다른 사업장은 삼성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산업안전보건의 환경 개선과 산재 판정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환노위에서 노사관계를 주로 다루고 일자리도 좀 다루고 산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다룬 부분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라도 산재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궁극적인 해법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고생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더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당 간사님, 중요한 협의를 다음에 해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 그전에 한 말씀 좀……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간사님 먼저 하시고 김성태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한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가 하는 것을 국회 저희 상임위 운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께서 “이미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저는 오히려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개 소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법률 소위는 아직 우리가,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하고 이것 심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아마 정기국회 거의 가까이 가거나 그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매년 보면 1년에 약 한 이틀, 삼일 정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국회가 그래서 예결산 심사를 1년 내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관례로 보면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년 내내 열리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3~4일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원소위는 제가 18대 국회에서 한 번도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설소위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소위를 만든다고 해서 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런 사회적으로·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원인도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임위 하루 열어서 정말 수많은 사안들을 이야기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지난 18대 국회 때는 구제역에 대해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위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진중공업의 문제도, 저희가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열게 된 과정을 보면 노사 간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이게 사회적 문제로 돼서 저희가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한진중공업에서 이런 정리해고가 발생했고, 또 사측은 사측대로 나와서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또 노조는 노조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결국은 노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그런 역할을 저는 국회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역사를 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수많은 노동 현장의 사건들, 개별 기업의 사건들 다뤘습니다. 특히 재

벌 대기업의 문제는 저는 단순하게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한 기업에서 일어난 문제지만 이것은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 전체의 노동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쌍용자동차 문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삼성 백혈병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저는 만약에 국제적으로까지 문제가 돼서 그랬을 때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민주화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쌍용자동차,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 대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것이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노동권, 그다음 이런 어떤 직업병에 걸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국회, 이것은 경제민주화도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님께서 “쌍용자동차 문제는 사실은 기업이 어떤 신차 개발을 통해서 성공하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지금 당장은 무급휴직자를 비롯해서 정리해고자들이 막바로 쌍용에 복직하는 문제, 그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급휴직자를 비롯해서 이 정리해고자들이 결국은 최소한의 생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서 죽음까지 계속 선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 쌍용자동차가 신차를 개발해서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런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쌍용차, 좋습니다. 정리해고소위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당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 같은 것을 도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한진중공업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청문회를 하면서 그 결과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또 정리해고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난번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그 법안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출할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상임위 하기 전에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예정된 시간이 30분인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오늘 이 소위 관련 회의시간 1시간은 거의 우리 민주당에서 다 할애한 시간들입니다.

좀 전에 민주당 간사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의 상임위 상설 소위를 폼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과 인식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누워서 침 뺏기 식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상임위 상설 소위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성화시키고 활용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국회가 지각 개원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니다. 사실상 이제 상임위 소관 부처 업무보고도 처음 받는 날입니다.

부처 업무보고와 또 산업 현장의 노동 문제 또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된 현장감과 또 인식을 가지기 전에 사실상 이 소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흐를 공산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소위는 특수성과 또 상당한 집중이 필요할 때 구성되어야 되는 게 소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쌍용차 부분이나 또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문제 처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의 폭넓은 인식과 또 공감, 그런 여건이 좀더 형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산재법 개정을 위한 합의체로 산재소위를 두자고 아까 한정에 위원님이 오늘 정말 좋은 제

안이 있었습니다. 이 산재법 개정을 위한 합의체로 산재소위를 두는 것은 좋은 제안이지만 이것은 또 우리 환노위의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의 가장 핵심입니다.

노동부의 많은 업무 중에서도 산재 관련 법 개정은 우리 환노위 위원들이 해야 될 가장 일상적인 활동 중의 하나예요. 이것을 갖다 그냥 소위로 또 제한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되레 우리들의 활동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하고 또 산업 현장의 산업재해 제도개선을 위한 이런 산재소위가 구성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리 상임위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펼치면서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더 우리가 관심 깊게 또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논의를 마쳐 줄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처음 나눠 봤는데요, 두 분 간사 간의 협의에만 맡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진이 있었고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간사 간의 협의에 맡길 일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의 의사 조정을 통해서 의사 진행하면 훨씬 더 좋을 듯도 싶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가 아주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도 여야 간사에게 오늘의 의사를 좀더 수렴해서 좀더 의논해 본 다음에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회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속개하고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용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원래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늦게 여야 간의 합의로 저희 여야 위원들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먼저 하게 되어서 30분 늦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업무보고(계속)

가. 고용노동부

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다. 중앙노동위원회

라. 최저임금위원회

(10시42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이상 4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구체적인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4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예, 말씀하세요.

○**홍영표 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업무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홍영표 위원** 장관님,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를 하게 될 이채필 장관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고 사과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에 이채필 장관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국민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과 크게 괴리되는 일을 한다면 정부로서는 헌법상 부여된 재의 요구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방안도 굳이 피할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채필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더라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얼핏 들으면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국회를 무시하고, 특히 헌법에 보장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발상에서 나오는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노동관계법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고쳐 봐라. 정부로 보내면 거부권 행사하겠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든 말든 여야 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거부하겠다’ 아니, 어떻게 장관이 이런 발언을……

○**김성태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홍영표 위원** 들어 보세요.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 바로잡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제가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들어 보세요.

○**김성태 위원** 아니, 의사진행과 질의는 구분되어져야지, 지금 무슨 질의를 하고 있어요?

○**홍영표 위원** 이렇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에 보장된 이런 국회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이채필 장관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을 그런 자격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홍영표 위원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분명히 해명을 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최봉홍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위원** 회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같은 문제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대표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최봉홍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하고는 틀린 거 아니요?

○**홍영표 위원** 저렇게 오만방자한 장관 앞에서 무슨 놈의 업무보고입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업무보고 전에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세요.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지금 홍영표 위원님의 발언의 요지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아까 지적한 문제가 있으므로 장관의 사과가 없으면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이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까? 결정을 해 가지고……

○**홍영표 위원** 그것은 김성태 간사님, 중요하게 아니고 저렇게 국무위원이 입법부를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해명을 하고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김상민 위원** 위원님,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요. 새누리당 위원이 그것에 동조했다고 발언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새누리당 위원이 잘못된 거예요? 저하고 논의하셨습니까?

왜 장관님께서 잘못 발언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 위원들을 통째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홍영표 위원** 내가 언제……

○**김상민 위원**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홍영표 위원** 내가 어떻게 발언을 했습니까?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위원도 잘못된 얘기가 저런 장관님 앞에 두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홍영표 위원** 아니, 제가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같은 문제다, 같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김상민 위원** 같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영표 위원**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같이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마치……

○**홍영표 위원** 아니,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김상민 위원** 저희가 장관 편에 서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처럼 ‘새누리당 위원도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홍영표 위원** 아니, 제가 발언을 하는데 그것을 저지하고 못 하게 하니깐 그런 것 아닙니까?

○**김상민 위원** 그러면 간사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새누리당 위원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과하세요! 그리고 사과 요청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홍영표 위원** 내가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는데,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저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김상민 위원** 아니, 새누리당 위원님 누가 저지했습니까?

○**홍영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같이 관련된 문제다’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정확하게 발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홍영표 위원** 좀 참고 들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최봉홍 위원** 그것은 혼자 생각이지. 새누리당 하고 환노위 전원이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 중요하게 보고받는 공식업무인데, 혼자 생각을 가지고 회의진행 방해라고 전부 결의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홍영표 위원** 아니, 내가 무슨 결의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한 것 아닙니까?

○**최봉홍 위원** 그 얘기는 의사진행발언이 될 수 없다 아닙니까?

○**홍영표 위원** 왜 의사진행발언이 안 됩니까?

○**최봉홍 위원** ‘사과부터 먼저 하고 하자’ 그러면 회의를 중지하고 사과부터 하자는 얘기가 의사진행발언이 맞습니까?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저런 장관 업무보고부터 들어야 됩니까?

○**최봉홍 위원** 무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문제도 서로 간사 간에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영표 위원** 그게 무슨…… 간사 간에 의논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이런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닌……

○**최봉홍 위원** 의사진행절차를 밟고 정해진 시간에 회의를 진행을 못 하는데 간사 간 협의를

안 해도 돼요?

○**홍영표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깐,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으니깐 그만두라고 하시라고요.

○**위원장 신계륜** 자, 위원님 여러분들, 위원장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명을 얻고 발언하시고요, 짧게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사과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새누리당 전체 위원들이 마치 그것을 반대하는 식으로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당, 우리 새누리당 각자의 의견이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김경협 위원** 내용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오해한 것 같고요, 속기록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김상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홍영표 위원** 아니, 나한테 사과를 하라는데 사과할 게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최봉홍 위원님이나 몇 분이서 저를 저지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 위원님들하고도 다 관련이 된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저는 관련이 없어요.

○**홍영표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 예, 그리고 위원님의 의견……

○**홍영표 위원** 아니, 그것은 내 의견이니까.

○**김성태 위원** 장관 발언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홍영표 위원** ‘장관이 국회를 아무리 무시하고 경시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성태 위원** 그것은 아니지.

○**홍영표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런 장관의 발언은 우리 국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 관련된 발언을 하는 도중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께서 “장관의 저런 태도는 새누리당과 관련됐다.” 이런, 우리가 듣기로는 다……

그러면……

○**홍영표 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속기록 보세요. 괜한 트집 잡지 마시고요.

○**김성태 위원** 본인 말씀대로 오만방자한 장관의 자세와 태도를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우리하고 관련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발언형태였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홍영표 위원** 제가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발언 안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게 아니라면 김상민 위원님 주장대로 장관도 사과할 게 있으면 하고, 그 대신 새누리당 전체 위원들이 장관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지요?

○**김상민 위원** 예,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영표 간사님도 명쾌하게 해답을 해 주시고 마무리합시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면 회의를 중단해서 속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갑시다.

○**김성태 위원**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확인하십시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명숙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 이게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국민을 위해서 다 하는 건데, 짧은 말의 오해 때문에 시간을 너무 보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홍영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다 모여서 결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관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노동부와 의 질의 답변 가운데서 좀 겸손한 태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짚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새누리당을 얘기할 때 저는 이해하기를 행정부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서면 민주통합당 위원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을 포함한 전체 위원들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까?

○**홍영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게 맞는데, 그게 말에서 조금 오해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김상민 위원께서 그런 점이 있다고 동의를 하시고 사죄할 것은 사죄해야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거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여기서 밝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채필 장관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시작을 할 것인지만 여기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장관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모든 것이 여야 합의라든지 환노위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혀 얘기되지 않은 부분들, 논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마치 저희가 장관님 편을 들고 정부 편을 드는 입장 속에 동일하게 서 있다라고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난 발언을 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위원장님께서 잘못하셨으니까 그것들을 무조건 사과하십시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이 환경부나 어제 그제 질의에 대한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잘못되고 또 잘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발언하고 진행한 과정들을 토대로 볼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새누리당의 각자 위원들의 의견들과 생각들을 다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해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위원님의 일종의 의사 진행발언이지요. 의사 진행발언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사과가 없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까?

○**홍영표 위원** 저는 사과를 받을 때까지 업무보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선 하나는, 의사 진행발언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은 위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합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의사 진행발언까지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전에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위원장님한테 신청을 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고, 제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저지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하고도 관련이 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18대 국회부터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국회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해당부처의 장관이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논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떤 법안이 나왔는지 위원님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정애 위원** 발의할 것에 대해서.

○**홍영표 위원** 발의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 다 했습니다. ‘이 법안 하면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다음에 ‘소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장관의 지시를 받는 자기 부하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발언을 장관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를 오만방자하게 무시하고 경시하는 저런 장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보고, 오늘 제가 의사 진행발언을 얻어서 분명한 장관의 해명과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하고……

○**위원장 신계륜** 그러실래요?

짧게 해 주세요, 의사 표시를.

○은수미 위원 김상민 위원께서 이것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사실은 7월 23일 대정부질의 때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장관께서 여기 앉아 계신 장하나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무리 의원이라도 국무위원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국회의장님의 경고 이런 것으로 이어졌고 또한 저희 민주통합당 김기식 위원께서 공식적인 사과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때 일언반구 답변도 안 하셨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였느냐면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장하나 위원께서는 ‘재계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국무위원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경총 이희범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와서 “개별기업에 대해 소위를 만든다는 것은 반대한다. 개별기업을 부를 때 과급 효과가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58개의 법안 중 노조법, 비정규직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노동계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다”라고 이미 이희범 회장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한국경제에서 인터뷰를 하실 때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별기업……

거기다가 제가 두 번째로 문제라는 게, 저는 이것은 장관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있는 삼권분립과 입법권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그런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실제 인터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정부가 여당·야당—즉 국회겠습시다—을 바라보기보다는 국민을 바라보며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는 국회를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정부나 국회나 기본적으로 국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삼권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에 대해, 즉 행정부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대상 역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40조, 헌법 61조, 헌법 62조 등의 기본정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짧게……

○은수미 위원 따라서 그 삼권분립 자체에 대해

서 사실은 몰이해하시거나 이것을 뒤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종훈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훈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얘기가 점점 소위 구성도 가고 노동권에 대한 자기견해까지 가는데, 이렇게 하면 건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자신도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과를 받고 그다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홍영표 위원님의 개인 의견이면, 민주당에서 의논을 하신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개인 의견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토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정회하고 간사님들끼리 의논해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만 결론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되었던 문제 고용노동부장관, 잘 알고 있지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적절한, 홍영표 간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을 인사말 속에 포함시켜서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정숙을 유지하시고, 아까 문제를 제기한 홍영표 위원의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사말에 포함시켜서 같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민생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우리 부가 특히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고 그 질을 높이는 데에 정책 역량을 모아왔습니다.

‘일할 기회 늘리기’와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그리고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3대 기본과제로 삼고 정책의 성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올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5만 명가량 증가해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양적 지표상으로는 개선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사관계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 자율의 기초하에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고용 지표와 체감 고용 사이의 괴리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 쉽지 않다는 부족한 일자리 문제, 일 해도 잘살기가 어렵다는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예전처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빈 일자리는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애태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서 곧바로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과 이로 인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둔화 등으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정의 제일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처로서 ‘따뜻한 일터, 함께 하는 일자리’를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실력과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핵심 직무역량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또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한편, 고졸 전역자나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실시 등을 통해서 고졸자 중심의 인재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시행과 함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통해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연차적으로 상향하고, 현장 중심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넓혀가겠습니다.

셋째, 저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면서 금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10인 이하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 차별시정 업무의 수행, 불법파견 시에 직접고용의무의 부과 등 새로운 제도들의 시행을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를 확산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안심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려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낙후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노력과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라고 하는 독일조차도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최근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위기의 파고를 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위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갈등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슬기롭게 해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랜 갈등으로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생기면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종사자와 그 가족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노사 당사자가 지혜를 모아서 스스로 해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사를 돕고 그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노사가 역지사지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불가능한 최선책보다는 실현 가능한 차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시장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 짙어지지 않도록 패인 곳은 돌우고 성긴 곳은 단단히 다져서 국민들이 일자리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관련 된 말씀의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그야말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1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유예 끝에 노사정이 합의를 하고 각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아주 어렵게 입법화된 것으로서 현재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현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는 것도 적절치 않고, 현재로서는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서 개정법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염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국회의 입법권은 당연히 고유한 권한으로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와 정부 간에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원회)가 열렸을 때 노·사·공 위원 가운데 노동계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노조법이 곧 개정될 테니까 거기 가서 논의할 실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13년이라는, 세 차례 유예 끝에 아주 어렵게 개정된 법이 또 나름대로 연착륙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당연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만에 하나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뜻에 크게 괴리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의가 있다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는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다시 처리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은 ‘만에 하나’라는 가정법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국민의 뜻과 크게 다를 때 13년이라는 기간, 세 차례라는 유예 끝에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어 어렵게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김경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특히나……

○**김경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특히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들어 보세요, 끝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본회의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경련과 경총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사의 균형을 취하면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되게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이지, 제가 결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겠다, 침해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기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잠깐만요.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김경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아직 지금 장관께서 정확히 말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홍영표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동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통과되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상정된 것도 아닙니다. 법안 내용도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뭐냐, ‘소위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지금 장관이 해야 될 얘기입니까? 법안이 지금 통과되기도 전에, 발의도 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한 발언 의도가 뭐니까?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개정해 봐야 소용없으니 애당초 개정하지 마라. 국회 입법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도 아닌가요? 국회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전에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장관의 월권행위입니다.

변명을 듣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과입니까? 분명하게 사과하십시오! 월권행위에 대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분

명하게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혹시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 진행하시지요, 계속.

○**위원장 신계륜** 발언 짧게 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발언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또 읽어야 되겠네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론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극소수 노조간부의 과거 회귀적 발상이다. 극소수 노조간부의 기득권을 생각하는 것이지 대다수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경쟁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뜻과는 배치된다.”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나온 표를 의식한 법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는 노동계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다만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법에 있다. 그런데 특정 노총이 특정 정당의 예하 조직으로 통합했다. 그리고 현직 특정 노총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이 됐다. 노조의 자주성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우려된다.” 이것은 국무위원, 본인이 국무위원이신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시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도 위반됩니다.

아니, 그러면 워낙 매뉴얼 좋아하시니까 매뉴얼로 만드시지 그랬어요? 노동조합, 노조 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총연맹 위원장은 최고위원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과거에 산별위원장은 산별위원장 하면서 국회의원 겸직한 적 있지요, 한 2년 동안? 그러면 ‘산별위원장은 국회의원까지는 된다’, 매뉴얼로 만들어서 또 한번 뿌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기하지 아니하고 어디 편파적인 발언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한국경제에 실은 내용은 진짜로 하나도 노동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전부 정치 문제와 관련된 얘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특별하게 입법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라고 한 거였고 위원장께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과하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한정애 위원**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

않아요.

○**위원장 신계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잘 회의를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김경협 위원님·한정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보다는 충분히 질의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지금 한정애 위원이 말한 ‘위원장께서 사과하라고 주문하셨다’는데 그것은 팩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 특히 이채필 장관이 ‘입법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걸 분명히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의, 간사회의까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계속 이렇게 사과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간사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진행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항상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상임위 되겠다는 게 엇그제인데 이렇게 해서 시간만 끌고 진도가 안 나간다면, 정말 위원장님, 통촉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홍영표 위원** 물론 아까 잠깐 정회를 하고 간사간에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장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인식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사간의 접촉에서도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장관의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도의 유감 표명이라도 기대를 했는데 자기변명만 하다 끝내지 않습니까?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부의 특히 장관이 이렇게 상임위에 나와서, 그리고 저는 지난번, 제가 그 자리 국회 본회의장에는 없었습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무위원을 모독하느냐’ 이런 식으로 발언했는데 우리가 그 문제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경련이나 경총의 하수인이 아닌데 나를 하수인이라고 한 것은 모독이다’ 그랬다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우리는 하수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지만, 지금 몇 가지 지적된 이런 국회의 권능과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서 저희 상임

위 전체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유감 표시, 제가 후퇴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감 표시나 정말 제대로 판단하신다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앉아 가지고 업무 보고 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회의 진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까 제가 장관께 홍영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이 중립적으로 볼 때도 의사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문제를 제기한 홍영표 위원께서 전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 다시 또 발언하실 내용은 없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든지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잠깐만……

아니, 저도 의도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오해되거나, 사실상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까지 참칭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의도와 달리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과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김경협 위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실상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법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게 입법권의 침해가 아닙니까?

‘소위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다’, 소위를 누가 구성합니까? 장관이 구성합니까? 이게 입법권 침해가 아닙니까?

의도하지 않았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으면 다 정당화되는 건가요?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님, 이제……

○**김성태 위원** 발언권도 얻지 않고 계속 비효율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위원장 신계륜** 위원장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해

야 할 업무가 참 많습니다만, 이대로 의사 진행을 바로 하기에는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사끼리 협의해서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간사 간에 협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럼 제 판단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은 나오셔서 간부들 소개를 하시기 전에 아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든지 무시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발언과 관련해서 오해하시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차관입니다.

한창훈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전운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재흥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입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입니다.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시민석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김재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안경덕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경선 대변인입니다.

황보국 감사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청장입니다.

임무송 서울고용노동청장입니다.

김제락 중부청장입니다.

박화진 부산청장입니다.

장화익 대구청장입니다.

송문현 광주청장입니다.

이재운 대전청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운배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전운배**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 여건, 주요정책 추진현황, 주요 현안, 그리고 2012년 입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원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은 모두 5733명으로 본부는 3실 13관 35과 5팀이며 소속기관은 47개 지방노동관서 4745명, 고객상담센터, 위원회 등 모두 5211명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1만 1132명으로 출연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있고 재출연기관으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동정책실, 3실 체제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 총계는 21조 6922억 원입니다.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총 지출 규모는 13조 1132억 원으로 예산은 1조 6670억 원, 기금은 11조 446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은 모두 39개로 자세한 법률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동향입니다.

금년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4만 9000명 증가하고 상용직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일자리 체감도가 아직 낮고 하반기 경제 여건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고용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동향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자율 기조하에 현장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제도는 산업 현장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총파업 등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일하는 사람들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크고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 전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금년도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일할 기회 늘리기’ ‘내 일 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로 설정하고 고용노동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국민들이 ‘내 일 희망’을 누리도록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일자리 정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장시간 근로의 근본적 개선과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 해소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터의 안전과 건강을 착실히 증진하면서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할 기회 늘리기입니다.

청년에 대한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을 확산하겠습니다.

열린 고용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에서 지역 강소기업 채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고졸 성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학벌·학력에서 실력·능력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비학위 기업대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졸자 중심의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졸 전역 예정자 및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일, 교육훈련, 자격이 연계된 특성화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산업계 공동의 맞춤형 인재육성 및 기업 연계형 현장학습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층 체감고용 개선을 위해서 청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계속 추진하면서 기업수요에 맞는 실무지향 교육훈련을 통한 일 잘하는 청년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체험, 진로지도 등 직업의식 고취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청년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자체 훈련시설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능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통해 지원하고, 합리적인 숙련 인력 스카우트 관행이 적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자의 오래 일하기 지원을 위해 고령연장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래 일하는 고용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 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래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추진하면서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육아휴직 부여 또는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계속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의 재직자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여성, 대학생 등을 위해 차별 없는 반듯한 시간

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기업의 고용률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확대, 전문상담교사 등 채용 시 10% 이상 장애인 구분모집 실시 등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솔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수요 연계형 맞춤형 훈련,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 취업연계형 양성훈련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방학 중 현장직무 체험을 위한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를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교육훈련-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한 워크 투게더 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설립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성·혁신성에 기반한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제품 판매로개척,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금조달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체계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융·복합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지방·민간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 현안토의 및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장·사업자단체 등의 일선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재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 재분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참여자 통합관리를 추진하였고, 특히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까지 포함하는 제3차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강화 등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영향평가 및 지역일자리공시제

도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일 희망 일터 만들기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연금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직업상담-훈련, 일경험-취업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곤란 청년·장년에게 종합지원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생계비의 직접 지원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를 포함,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긴급생활 자금도 대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시간 근로 줄이기입니다.

주 40시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 근로시간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노사정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장시간 근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 지원을 위해 지원과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요 업종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 줄이기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도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논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불법과건 제재 강화, 근로복지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기간제법 등 8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 및 불법과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 차별시정 지도권한 신설 및 불법과건 시 사용사업주에게 즉시 고용의무 부과에 따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과 같은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 합리적 고용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 고용질서 준수입니다.

임금체불 예방 및 해결 강화를 위해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금융 제재와 함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도입 및 도급사업 체불임금 연대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방학기간 중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준수 특별점검을 7, 8월 중에 집중 실시하고, 최저임금 지킴이,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등 최저임금 준수 의식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면근로계약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 복수노조 제도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제도의 정착으로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분위기를 확산하고, 미조직·비정규·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의 대표성 강화를 통한 근로자 참여와 협력 증진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과 지역 중심의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통합적 일터 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을 배려하는 지역·업종별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앞서서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노사관계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갈등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파업 시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장 그리고 분규 취약 사업장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분규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조정 서비스 강화를 통한 쟁의행위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안심일터 확산입니다.

산재취약 부문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사고 위험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

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생협력 안전보건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기업·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공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안전보건 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택배·커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업무상 질병의 판정절차 전문성 제고 및 인정기준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예, 그러기는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김성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새로 오신 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할게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전문배** 예,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자동차 관련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 회사 측의 경영정상화방안 발표에 대해서 노조는 경영상 해고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업 및 공장 점거농성을 하였습니다. 2009년 사측은 976명에 대해서 경영상 해고를 하였고,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 및 농성해제를 하였으며 합의에 따른 인력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9월 8일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에서 쌍용자동차노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 최근 회사의 연구직·경영지원직 등 83명 채용을 둘러싸고 해고자들은 인력채용은 경영상태의 호전을 의미하므로 노사합의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연구개발·경영지원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 채용 대상이므로 무급휴직자·해고자가 담당하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쌍용차노조와 사측은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무급휴직자 지원방안에 합의를 한 바가 있으며, 사측은 협력업체 취업박람회 개최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상황과 노사 입장입니다.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회사 측 주장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128억에 달하고 있으며 주간조 3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만 정상 가동되고 있고 유희인력도 9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복귀 관련 노사 입장은 무급휴직자는 노사 합의에 따른 업무복귀, 해고자는 복직, 쌍용차노조는 경영정상화 노력 동참, 사측은 무급휴직자의 경우 2교대 물량이 확보된 시점에서 업무복귀가 가능한 해고자는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소송 등 사건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정리해고자 156명이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있으며 금속노조 등은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제기 및 고소를 하였으며, 무급휴직자 248명은 금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간의 지원노력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장관이 현장방문 및 노사대표 면담 등을 통해 무급휴직자 등의 조속한 복귀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한 바가 있으며,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여러 가지 지원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무급휴업·휴직자 직접지원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로자 유족의 산재 신청에 대해 개별 및 집단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현재 삼성전자 근로자 25명이 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 등으로 산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백혈병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비호지킨립프종이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로자 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건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관이 현장을 방문, 재발방지 방안 수립 및 이행을 당부하였고, 반도체 근로자 보건관리개선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관리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밀 작업환경 노출평가에 대해서는 반도체 일부 공정 대상 정밀 작업환경 노출평가 연구 결과 벤젠 등 발암성물질이 부산물로 미량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및 작업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보건관리 개선계획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면서 정밀 작업환경 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반도체 산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며 반도체 암 발생 위험률을 재평가하기 위한 장기적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관련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및 중노위 부당해고 재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7명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1759명은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부당해고·징계 관련 중노위에서 일부 사업장이 불법파견으로 재심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 방향입니다.

해당근로자 직접고용 문제는 판결을 존중하여 현대차가 해당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 고용 문제는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는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이므로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신중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자동차 점검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분쟁이 법원·노동위원회 등에 계류 중에 있으며 따라서 진행 중인 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련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9대 최저임금위원

회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양 노총은 국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위촉, 노사와 협의 없이 공익위원 위촉 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최임위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쟁점사항 검토입니다.

국민노총에게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국민노총은 지난해 설립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며 법령에 따라 총연합단체인 국민노총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 것입니다. 공익위원 선정 시 ILO 협약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ILO 제131호제4조제3항에는 공익위원 선정 시 국내법령이나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단체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법령에 공익위원은 고용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노사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은 없습니다. 또한 노사 협의를 통한 공익위원 위촉 시 공익위원이 준근로자 위원·준사용자 위원이 됨으로써 공익적인 입장에서 심의하는 위원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 관련입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 노조법은 지난 97년 여야 합의에 의한 법 개정 이후 13년간의 유예 끝에 2009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10년 1월 1일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양 제도는 산업현장에 순조롭게 안착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 등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 일화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등을 중심으로 노조법 재개정을 지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법 재개정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국제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노사정 합의로 개정된 노조법의 재개정은 13년간의 논의를 백지화하고 노사관계를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동 제도의 후퇴는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으며 노사정의 많은 논의를 거쳐 노사의 이해의 균형을 맞춘 노조법의 재개정은 노사관계의 원칙과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개정 노

조법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사정 모든 주체의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입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에 국가기술자격법 등 총 14건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회 시간은 2시 30분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계륜 의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대 개원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는 소중한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노사정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눔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현안 노동과 사회적 과제를 생산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의제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근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제도의 합리적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실근로시

간단축위원회도 운영 중입니다.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고령자 고용의 문제를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생관계에서 풀어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간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율 0.7% 수준을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제별 위원회 이외에도 주요 이슈별로 다양한 담론 형성을 위하여 포럼이나 연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아울러 심화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도 다양화되고 다원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정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되 비정규직이나 시민사회, 취약계층 등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틀을 만들고 논의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운영 지원 및 민간 중심의 사회적 대화체 등과 상시적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여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사정기구연합에서 2009년도 이사국으로 선임된 이후 아시아를 대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11년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시 이사국으로 재선임되었고, 금년 6월 브라질 리우 총회에서는 보고서 책임국으로서 환경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또 이것이 채택되는 등을 통해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1월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향후에는 차기 의장국으로 진출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EU FTA 자문시민포럼의 한국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EU위원회의 사무국인 경제사회위원회와 적극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여 국가 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계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현택 상임위원입니다.

최기동 운영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엄현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엄현택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 15일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현재 07년 4월 27일 제4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해서 현재 우리 최종대 위원장님께서 10대 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직 및 주요 인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체는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또 의제별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처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있고, 예산은 3쪽 하단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37억 5100만 원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제별 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는 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사회보험제도 개선방안 또 사각지

대 해소 등의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전달 책임 개선방안 등의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난 2월 24일 발족한 이후에 고용 복지를 연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 마련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고, 휴일·휴가 활용 촉진 방안, 임금 관련 개선방안, 교대제 개선방안,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연장근로 개선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노사정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관행 개선을 위한 논의에 주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의제별 위원회로 세대간상생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 청년 고용을 증진하는 새로운 고용모델의 발굴,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으며,

네 번째,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산재 다발 국가로서의 오명을 씻고 산업 안전보건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위원회로, 주요 대상 의제로는 6쪽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의제로 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 예방거버넌스 재구축 방안 도출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틀의 두 번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간의 대화를 촉진해서 소통채널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 그리고 상무위원회를 주요 계기마다 개최하고자 하며, 민주노총의 회의체 참여를 유도하고 또 본위원회 복귀 노력도 계속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역·업종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횡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중간 단위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업종별 회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위와는 별도로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노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상반기에만 네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토론회 의제는 당구장표로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서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 부진사항과 미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점검 이외에도 현장실사점검, 본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서 이행 주체의 이행을 독려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국제협력의 강화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노사정기구 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국 역할을 적극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이사회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고위 관계자가 다수 참석한 지난 6월에 개최된 리우총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환경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으며,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 시민사회포럼 사무국을 운영해서 EU와의 협상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1차 회의가 지난 달 브뤼셀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EU와 우리나라 간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동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대화 지원 기반의 마련입니다.

다원사회에 대응한 노사정위원회 개선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원사회에 맞춰서 지역과 업종, 시민사회 등이 포함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논의체계와 논의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참여 주체, 논의 시기, 논의 의제, 논의 결과 처리 등에 있어서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홈페이지 개선, 또 SNS 등을 통한 소통 등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공간을 확대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노사정위원회 위원 현황과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노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노동위원회 직원 모두는 이번 보고를 통해 노동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해고 등의 심판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시정업무, 필수유지업무, 복수노조 관련 업무 등을 새로이 담당하게 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의 경우 노사 자율을 최대한 지원하되 중점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조정활동, 사후 조정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6월 말 현재 조정신청 사건의 64.9%가 조정이 성립되어 노사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심판사건은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사실조사와 위원 및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차별시정 통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등 관련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복수노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금년 7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사건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동위원회가 앞으로도 노동쟁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심판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노사분쟁 해결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은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노동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중앙노동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우 사무처장입니다.

박동국 조정심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심경우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심경우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고, 5개 분야별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그리고 공익, 3자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로서 준사법적인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먼저 집단적 노동관계와 관련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그리고 조정·중재·긴급조정 등 노동쟁의의 조정,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나 운영수준 등의 결정,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해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위원회 연혁입니다.

1954년에 최초로 설치되었고, 1980년에 관리관청이 노동청으로 일원화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위원장 직급이 정무직으로 변경되면서 그 위상과 기능이 격상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노동위원회 직제가 확대 개편됨과 동시에 차별시정위원회가 신설되고 또 위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는 복수노조업무 처리를 위해서 교섭대표결정과를 4개 지노위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조직은 재심 판정 및 둘 이상의 지노위에 걸쳐 있는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부산 등 12개 지역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그리고 관장 업무에 따라 심판·조정위원회 등 부문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업무량에 따라 노사위원이 각 10인~50인, 공익위원은 10인~70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노위가 170명, 지방노동위원회가 1570명, 총 17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처 또는 지노위의 경우 사무국의 정원은 379명입니다. 이 중 중노위가 96명, 지방노동위원회가 283명입니다.

5쪽, 조직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와 상임위원 그리고 조정심판국에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304억 32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5.4% 정도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 중 사업비가 31%, 인건비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심판 및 차별시정 업무입니다.

먼저 심판사건은 금년 상반기 현재 7011건이 접수되어서 전년 대비 6% 정도 감소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중 5388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화해가 한 35%, 판정이 34%, 취하는 31% 정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차별사건은 상반기 현재 40건이 접수됐고, 작

년 동기 대비 한 90%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심판사건에 비해서 사건 수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이 중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심판 및 차별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는 화해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 단계부터 화해제도의 절차나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또 심문회의 중에도 화해 권고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화해 건수는 전년 대비 한 4.6% 증가하였고, 화해율도 5.5% 증가한 실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과 화해를 포함해서 근로자 권리 구제 비율은 한 65.9% 정도로 전년보다 9.6% 증가한 수준을 보여 줍니다.

아울러서 월 17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814건에 2억 8000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행정소송에 가지 않고 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이 처리되는 비율이 9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건 적체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또 판정서 작성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47일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에 도입된 이행강제금 및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충실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신해서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별시정업무를 활성화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별시정 통보제도 시행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위원회 규칙이나 관련 업무 매뉴얼을 개정·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차별시정 판례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차별시정만을 전담하는 조사관도 지정·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쪽, 노동쟁의 조정업무입니다.

상반기 조정 신청은 328건으로 전년보다 한 11.6%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 조정 성립률은 64.9%입니다. 작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은 08년 제도시행 이후

에 총 211건 정도, 금년도에는 1건으로 정착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 46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내실 있게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상근조정위원을 각 지노위별로 총 129명을 위촉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사전·사후 조정 등 단계별로 조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조정회의 운영을 위해서 현장조정 서비스 제공 또 조정 횡수 증회, 조정 연장 권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능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노사대표가 조정회의에 직접 참여하도록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복수노조제도 관련 업무입니다.

금년에 343건이 접수돼서 294건 처리했고요. 작년 7월 시행 이후 하반기에는 133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유형 중에, 표에 보시면 교섭요구 공고가 115건 또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이 176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교섭대표 결정, 공정대표 의무 사건도 일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복수노조 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교육, 또 사례 분석집 제작·배포도 하고 있고 부서 내 커뮤니티 활동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소송 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재심판정 371건 중 135건이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작년 대비 한 104건 정도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종결된 145건 중에서 재심판정이 유지된 건수가 122건으로서 재심유지율은 84.1%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재심유지율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소송 절차나 기법 등에 대해서 수시 교육하고 또 쟁점 파악, 법리 검토 등을 심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 결과 분석 및 피드백을 전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위원과 조사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위원회 홍보 관련 업무입니다.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가 공정한 판결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워크숍, 교육, 사례 분석 등 다양한 전문성 강화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최대한 객관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 잘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포상, 또 화해제도 등 업무에 유공이 있는 위원이나 직원들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브리프’ 또 ‘조정과 심판’ 등을 발간해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첨 사건 처리 절차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역시 인사하신 후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성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모두 12차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하여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과정에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심의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차이가 너무 커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사업체 방문을 실시하였고 임금 실태, 생계비,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등의 관련 지표를 심의하였으며 의견이 서로 다른 노사 양측과 소통에 진력하여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최저임금이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최저임금안 심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심의 기초자료 준비에서부터 심의 의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조언들은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무리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국 상임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2012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설치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7년 7월 30일 출범해서 금년까지 26회에 걸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리고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명, 합계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이 전원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인원은 정원 9명에 현원 8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작년 8억 4300만 원에 금년 8억 40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쪽, 위원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심의자료 산출 및 현장방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생계비나 유사 근로자 임금 실태, 경제성장이나 생산성과 같은 주요 노동·경제지표 등 심의자료 산출 및 사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 임금 실태, 단신근로자 생계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주요 노동·경제지표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총 16개 사업장을 권역별로 각 분야의 노·사·공익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방문하고 최저임금 사업주와 또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 동안 개최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시간급 4860원—이 4860원은 전년 대비 280원 인상이고 전년 대비 6.1% 인상입니다—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임금안 심의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아서 5쪽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나 전문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한 연후에 6월 21일 7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받아서 6월 28일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요청에 의해서 공익안을 제시하고 6월 29일, 6월 30일에

걸쳐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로 상반기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준비 또는 의결을 하고 하반기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이후에 최저임금 적용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세 취약업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취약업종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 제고를 위한 인터넷 기반 가칭 최저임금계산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근로자 본인의 근로형태와 임금을 입력하여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 위반 여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에 따라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최저임금 위반이나 체불 위반 여부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상반기 때 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했습니다. 관련내용이 워낙 좀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시킨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전문직 출신 퇴직자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실버지킴이 사업 운영, 최저임금 시민감시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고용부와 검토해서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19대 국회 노동부에 대한 환노위 질의에 노동부 출신으로서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세 분의 위원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지방청장님들, 상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의 오늘 위로의 말씀으로 다소 피로가 풀렸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어제 간부들이 몇 시에 퇴근한지 아세요? 차관님께 물었습니다.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차관 이재갑 보통 국회……

○이완영 위원 차관님, 몇 시 퇴근했습니까?

저도 25년 정도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에서 으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장관님들 답변하는 내용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솔직히 한번 떠올려 보면 참 좋은 질문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우리 노동행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한편 가끔 어찌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할까 하는 그런 것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환노위 위원으로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환경부 질의를 하면서도 우리 환노위 위원은 무조건적인 질타보다는 대안 제시로 해서 생산적인 환노위가 되도록 애를 쓰겠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동부에서도 방어하려는 자세보다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가능한 수용하고 또 오늘 이후에 더 바빠져서 많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서 장관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 죽은 것하고 산 것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본론을 직접 말씀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은 존경하는 최종태 위원장님께서 회의 주재할 때 하신 말씀인데 뻗뻗함입니다. 그러니까 경직성과 유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노사관계의 유연성은 말할 것 없고 요즘 고용의 유연성까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B정부 초기에 상당히 노사관계가 안정 추세에 있고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장관님이 '최근에 조금 분류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도 하

셨는데 최근에 늘어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치·사회적인 변화
도 있고 또 방송사 쪽의 분규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조그마한 영세사업장에서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표출되면서 드러난 분규가 늘어난 것으
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노동행정을 하면
서 항상 노사관계는 노사정 관계기 때문에 노사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공정한 역할을 주문을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 노동단체를 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우리
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진정하게 인정을 해
왔는가, 이제 거의 5년 다 되어 갑니다마는 이런
점에서 노동계에 대해서 진정한 파트너로 대화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여쭙 보고 싶습니
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
정이 서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 대단히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균형된 입장을
당연히 취해야 하지만 노와 사쪽의 처한 사정이
어떠한지를 늘 살펴서 입장을 고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해 왔습
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문제로서 특히 노동계와의
소통, 대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염려를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노동
계, 노조의 정치 운동과 결부되면서 노동운동의
정체성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고 좀 협의가 소
홀한 결과로 비쳐진 면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짧
아서요.

장관님이 아까 오전에 집단노조법 관련해서 우
려가 많이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 17일
근면위 참석하셔서 타임오프에 대해서 다양한 의
견을 듣고 또 현재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효과
분석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
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번에 제2기 근면위
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구성되면
서 위원장도 모셔야 되고 또 노동계 간사, 경영
계 간사, 공익 간사 선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된 여러 운영 상황에 대

한 보고도 드리고 그 끝에 필요하다면 향후 근면
위 운영에 대비해서 타임오프의 운영 상황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효과 이런 부
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
다면 그런 준비작업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
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를 부칙에 당연히 또 검토하게끔 되어 있
는데요. 이게 바로 좀 그 당시 2010년 하반기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노동계에서 원했는데 1년 정
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동부의 의견
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즉 다시 말
해서 2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처음 열려고 하는
데 노동계에서는 아시다시피 전국 규모 사업장이
나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는 부칙에 나와 있듯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서 좀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만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를 조속히 추진할 의향이 계십
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근면위 운영을……

○**이완영 위원**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원래 3년마다 그 적정
성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2010년 7월 1일부터 타임오프가 적용이 되
어서 이제 2012년 7월이 2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단협이 2년이다 보니까 지금 정도
부터는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겠는데 노사관계 학회
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타임오프
적용을 한 이후 전국적 분포 사업장이라든지 교
대제 근로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별다른 영
향이 특별히 없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리고……

○**이완영 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부칙에 당
연히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지 않
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연구용역 해 보니까 ‘별
달리 할 것 없다’ 이런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용
역만 가지고 또 일하실 것은 아닐 거고요, 또 우
리 수요자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필요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저는 가급적 빨리 장관님이 추진하는 의향만
표현해 주시면 노동계가 다시 근면위에 참여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조속히 추진하겠는지 여부만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근면위 위원 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면위 위원들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부칙에 있는 바와 같이 전국적 분포 사업장이라든지 교대제 사업장의 특례에 대한 사항을 심의 굳이 못 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중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좀더 같이 또 논의를 해 봅시다.

그것 관련해서 상급노동자 단체 파견 전임자가 이 역시도 별도로 정해 주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을 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지적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제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노조에 직책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상급단체에 파견 보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추가가 아니고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노사자율을 좀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임오프라고 하는 것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노조 재정의 자주성을 전제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그런 출구를 열어놓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상급단체 활동 그 자체만을 위해서 현행 고시 한도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출발선상의 논리, 취지와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노동법의 해석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해석이 아니고 법령 취지상 당연히 당해 사업장을 분모로,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해서 단위사업장 노조 간부를 겸직하면서 상급단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현행 고시 한도 안에서는 인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완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이채필 장관님의 발언들이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헌법과 또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권리를 지켜야 할, 지키고 보장해 나가야 할 그런 부처의 장관으로서 참 완전히 그것과 배치되는 이런 발언으로 최근에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된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어떤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더라도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향상시키고 또 노조가 어떤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능만으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이 노동자들의 그런 권리라든가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단위사업장의 어떤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좀더 넓은 어떤 단결권을 보장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사업장 노조뿐만 아니라 산업별 노조도 인정을 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넘어서서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에서 저는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헌법상 노동권이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단위사업장의 노조활동에 대해서 당연히 존

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노조활동이 존중되는 것과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반드시 회사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노동권의 보장 문제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제가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관께서는 2월 14일 날 보면 ‘정치의 계절을 맞아서 노동계가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고 정치권도 노동자 표를 의식해 가까이 가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어떤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활동이 잘못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동조합이 정당과 연대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한 단체가 되었고, 이 경우에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도 독립되고 정부로부터도 독립되고 정당으로부터도 독립되는 것이 자주적 지위를 유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법으로 허용된 정치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노동조합과 정당이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다든지, 현직 노조 간부가 정당의 간부가 된다면 하는 인적·조직적 통합의 문제로 갈 경우에는 결국에는 노동운동 조직과 정당 조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려한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지금 방금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조직이라고 했지요? 노동조합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노동조합이 하거나 할 수 없거나 이것은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홍영표 위원** 아니, 헌법에서…… 혼자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또 단체교섭권 특히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주성이 생명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노조 자체가 판단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자신들의 어떤 목표, 권리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정당과 연합을 하든 함께 하든 그것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최종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장관처럼 ‘정치권도 노동자 표를 의식해 가까이 가려는 측면이 있다’ 또 ‘소수 노총 간부의 이익을 추구해 온 것으로 정책 지향점이 달라 언젠가 팽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타임오프 복수 노조 창구단일화 이것에 대해서 노조 지도부가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 법안 통과에 동의했었습니다. 그 지도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조합원들에 의해서 거부됐지요?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대해서 장관이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합니다. 노동조합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특히 단결권에 대해서, 단결권의 자주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 특히 개입해야 하는 그런 개념과 가치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의 한 주체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이 볼 때 정도를 벗어났다’ 그리고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는 노조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선거 직전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명백한 선거에 대한 개입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져야 할 장관이 선거 바로 직전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또 정당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끼어들어서 그것을 폄하하고 근거도 없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주적 결정 한 것에 대해서 개입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장관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한 사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독일 또 스웨덴 많은 나라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알면서도 부정을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례를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ILO의 입장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노조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정당과 자유롭게 맺어진 관계를 구실로 노조의 정상적 기능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 이게 ILO의 해석입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노사관계 선진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제기구의 해석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통합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나서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명백히 훼손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의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달리 특별히 더 많은,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노동조합법을 비롯해서 노사관계 주무 부처의 장관입니다. 제가 노조의 정치활동 자체를 전혀 부정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든 야든 막론하고 노동조합이 노조법의 취지에 맞는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더더욱 제가 환영합니다. 다만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 하고 이해해 주시고요.

노동조합법 제2조4호에 보면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노동조합이 정책적으로 연대를 맺고 있는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연대와 지지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조직적·인적 통합을 할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

주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도를 지켜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

외국의 예전 사례는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유지하는 사례이고요. 지금의, 지난번 문제됐던 사례는 노동조합이 정당에 흡수 통합된 사례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분당갑구의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훈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갑 새누리당 이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민생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저도 좀 놀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보도자료도 내려고 했더니 어제 벌써 신문에 어디서 났더라고요.

노동부에서 흘리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닙니다.

○이종훈 위원 지금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쪽의 법정적립금 수준이 원래 1.5배 이상 2배 미만인데 지금 0.4에 불과한 것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종훈 위원 수입이 지난 5년간 7.1% 증가한 반면에 지출은 12.9% 증가해서 이게 5년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곧 고갈될 것 같고, 실업급여는 무조건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종훈 위원 정책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 문제가 더구나 요새 복지 강화 이런 것과 물려서 굉장히 앞으로 지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복안이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 지출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이전에는 연간 2조 8000억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는 무려 4조 원이 넘었고, 또 2010년도에 3조 6000억, 2011년도에 3조 5000억 이렇게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이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서 작년에 실업급여요율을 일부 0.9에서 1.1로 인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수

준만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지출에 있어서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최선의 해결은 실업자가 되더라도 조기에 재취업을 해서 다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이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을 잘 해 나가고, 혹시 앞으로 경기나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방안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제출해 주시고요.

부정 수급 문제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일부 부정 수급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일선 관서에 부정 수급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부서를 두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모럴해저드하고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즉, 노동문화 차원에서 부정 수급 문제는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수입 구조와 관련해서 지금 비중은 작지만 여유 자산 운영수익이 2011년도에 0.61%밖에 안 돼서 문제가 심각, 이것도 아주 급격하게 작년에 줄어들었는데요. 좀 자세하게 보니까 주식에서 많이, 이걸 고용보험·산재보험 다 마찬가지로인데, 고용보험이 -10.39%, 산재보험에서 -9.17% 해서 고용보험의 경우는 0.61%, 종합적으로 수익률이 그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유 자산 운용 방식에 대해서 기재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평가를 낮게 받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 부분은 각종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을 살펴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수익률이……

○**이종훈 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수익률은 작년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률 자체는 낮는데, 운용 방식을 제가 말씀드린 게 기금운용평가를 보면 계량 지표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비계량 지표 즉, 자산 운용을 하는 방식이나 조직에 전문 인력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리스

크관리위원회도 두 번밖에 안 열었고 등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주 미흡’을 받았어요, 비계량 평가에서.

그러니까 고용보험기획과에서 고용보험기금하고 산재보험기금하고 합해서 10조를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거기서 하는 방식이, 결국 얼마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기금운용평가에서 지적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제가 임금 체불 문제를 좀 물어봐야 돼서 그냥 임금 체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체불이 2011년 기준으로 1조 1000억 가까이 되고 28만 명인데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 보면, 공인노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 보면 대체로 실제 임금 체불된 사람 중에 30%만 구제받으려고 신고를 하지 나머지 70%는 신고조차 못 하는 사람들도 많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는 한 3조가 넘는 거고 한 90만 명 이상 되는 건데,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노동부와 관련해서는 임금 체불자 자체가 노동부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임금 체불을 신고받으면 그것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원래 규정상에는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 해 주고 있고, 이것이 당사자인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장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임금이 체불되면 벌금을 체불액의 10~15% 정도 내고 그다음에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확인원을 근로자한테 떼어 주고 그다음에 검찰에 사건 송치하고 이것으로 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체불 사업주에게 근로감독관이 ‘임금 지급을 해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체불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불액의 10~15% 내는 것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내야 되니까 좀더 벌이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유독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임금 체불 현상이 심합니다. 이것

은 그동안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서 계속된 걸로 보이는데요. 사업주가 필요한 금융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 임금을 갚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반성할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주가 악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명단도 공표할 뿐만 아니라 금융상·신용상 제재도 가능하게끔 이번에 비로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체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 사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잘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 지급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불……

○**이종훈 위원** 구두로 하지요, 그냥 구두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체불 사실이 생기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급하게끔 하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사법적인 제재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지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금융상 제재, 명단 공표 이런 부분들과 결합되면서……

○**이종훈 위원** 예, 그것은 이미 발표하신 것 제가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결합되면서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위원** 그리고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체불 사업주의 재산 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그때 이제 나중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미 재산을 빼돌린다는지 이래서 체불 사업주로부터 임금 체불을 제대로 받게 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노동청 단계에서 재산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좀 있어야, 저는 지금 계속 노동부에 권한을 많이 드리는 걸 말씀하는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래야 임금 체불된 근로자를 좀더 빨리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일을 잘하라는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지급 관계는 민사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권리 의무가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라는 측면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고용보험의 평균 수익률은 다른 기금보다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부의 기금 평가 결과는 어떤 측면에서 봤느냐 하면 인프라 차원에서 직접 많은 공무원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다는 점이고, 저희들은 직접 운용보다는 다수의 증권회사, 운용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접근법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종훈 위원님.

○**이종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기금 평가를 해 봐서 아는데,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강변하시기보다 좀 잘 듣고 컨설팅이라도 받으셔서 자산 운용의 기본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받으시고, 그 부분에 개선 방안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의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민주당통합당 김경협입니다.

우리 장관님의 발언을 죽 해서 보면 노동부 수장으로서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정치를 하시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마 노동부 과장이나 국장으로 있을 때와 노동부장관으로 있을 때의 위치나 비중이 상당히 틀릴 텐데 자꾸 처신이나 발언에 신중하지를 못하고 발언이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영표 위원님의 질문에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흡수 통합됐다’고 그랬는데, 흡수 통합이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질문하신 겁니까?

○**김경협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김진표 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을 보십시오. “우리 당의 예하 조직인 한국노총이……”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김진표 위원이 얘기하면 그게 정답인가요?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흡수 통합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국노총의 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으로 가 있고, 애초에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통합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합니다.

○**김경협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합 결의를 한 게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창당 과정에 한국노총이 참여를 한 겁니다. 노동조합 조직과 정당 조직은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통합이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영국의 노동조합이 영국 노동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영국 노동조합이 없어졌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을 드릴까요?

○**김경협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르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정당을 만든다는 경우하고 정당이 노동조합을 끌어들이면 다르지요. 주체가 누구니까?

○**김경협 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해서 최고위원 9석 중에서 1석을 차지해서 의결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노총이 예속된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민주당에 물어 보십시오.

○**김경협 위원** 아니, 장관님의 견해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예속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제가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 한국노총이 지금 주로 정치활동

만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김경협 위원** 아니, ‘우려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한국노총이 주로 정치활동만 하고 있는 단체냐 이런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정치활동은 문제가 없고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김경협 위원** 그러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김경협 위원** 지금 한국노총의 전반의 사업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정치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여기에 지금 담당자 비중, 그다음에 현재 조합원들이 정당에 참여한 가입수,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김경협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이…… 한국노총의 전반의 사업에서 지금 정치활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쯤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20%가 안 됩니다. 거기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전체에서 참여하는 정치사업 예산이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 한국노총이 주로 정치활동을,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자꾸 하십니까?

그리고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서 정당에 흡수가 됩니까? 스웨덴의, 모든 유럽의 노총, 유럽의 정당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노동당,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정당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예속됐다고 얘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자체 결정 사항입니다. 방금 계속 장관님이 강조하셨던 노동조합의 자주성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자주성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이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장관님의 정치적인 발언 때문입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 안 되고, 정당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해서도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김경협 위원 장관님, 지금 읽어드린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드릴까요?

○김경협 위원 아니, 알고 계신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질문 다 하시면 모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제가 지금 읽어드린 공직선거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모르십니까?

○홍영표 위원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위원장대리 김성태 질의하세요, 질의.

○김경협 위원 2004년 당시에 정당 활동이 가능했던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은. 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원으로서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김경협 위원 지금까지, 장관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정치적인 발언들이 얼마만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에 위반되는지를 제가 지금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언젠가는 팽당할 것’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팽당할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참여를 결정하기 직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4월 12일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의 예속 기구다 그다음에 팽당할 것인지……, 민주통합당은 한국노총을 팽시킬 것이다 참여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결코 좋은 정당이 아니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국노총은 이용만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

지요. 그리고 ‘민주통합당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합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정당에 예속되는 것 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을 다 드릴까요?

○김경협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기본적으로 노조와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

○김경협 위원 그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는 얘기 말고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리고 노동법상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도 아실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 말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리고 제가 말씀……

○김경협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것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도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 장관님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충분히 위배될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 해 오고 언론 인터뷰를 해 왔습니다.

제가 또 하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필요한 발언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팽 얘기는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 잘못된 보도였기 때문에 정정 보도청구까지 한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 아, 그러면 이걸……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아까 통합이 아니더라고 했는데 ‘통합 수임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통합이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통합입니다.

○**김경협 위원** 노동조합과 정당이 통합이 가능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니까? 한번 읽어드릴까요?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 통합(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 이 건 뭐니까?

○**김경협 위원** 그것은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국노총에서 발간한 겁니다.

○**한정애 위원** 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국노총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한정애 위원** 노총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 수임기구에 못 들어가는데, 그 기구에 옴서버로 들어간 겁니다. 제발 법 좀 찾아보고 하세요. 법 좀 찾아보고 하세요. 자료 갖다 주는 권 국장님, 자료 좀 제대로 찾아 가지고 도와주세요. 법을 좀 찾아보시고……

○**김경협 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님도 1분……

○**김경협 위원**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10개의 공공기관 전 직원들에게 정당 결성 가입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공문이 있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산하 10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내용은 우리 지방노동관서 공무원과 그리고 공공기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간 사항이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한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10개 산하기관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원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10개 산하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지금 한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직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정당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제가 공무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하 10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지를 지금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산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활동을 하라고 공문을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보낸 공문은 뭐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공무원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한꺼번에 내용이 섞여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자, 김경협 위원님 이제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아니, 한꺼번에 섞여 있든지 그러면 대상을 달리 해서 보냈어야지요.

그리고 문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자, 김경협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질의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이 부분, 이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공문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공직선거법 85조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그 85조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대답을 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 잘 들으시고,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서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지금 장관의 답변 태도가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할 자세와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공자님 말씀, 나와 있는 정답, 그것 계속 지금 반복하겠다는 의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경고를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더 하면 분명히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답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김상민입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상민 위원** 질의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을 하면 뭐를 하시는 거예요, 장관님? 질문한 사람의…… 질의가 뭐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김상민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김상민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상민 위원** 제 말 안 들리세요? 제가 오늘도 소리를 좀더 높여야겠습니까? 질의응답 하는 게 뭐예요? 질문을 왜 합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지요.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질문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상 발언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발언하셨을 때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왜 그러실까, 장관님께서…… 굉장히 훌륭하게 행정업무나 과정들을 잘 해 오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태도와 자세는 또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학생들, 특히 어렵고 힘든 학생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활해 왔고 또 활동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한 대학생의 사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대학 8학기를 마친 후 휴학을 하고 정부 인턴 과정을 1년간 수료했습니다. 급여에서는 매달 고용보험비가 빠져나갔습니다. 인턴 수료 후 남은 학점이 있어 추가 학기 9학기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취업을 준비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실업급여 수여가 안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제가 이걸 여쭙 보기 전에, 요즘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김상민 위원** 장관님,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취업이 힘들고 학비 내는 것도 힘들어서 어디든 인턴 있으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부 인턴과정에 가서 이렇게 얼마 받지도 못하는 돈 안에서 고용보험비가 매달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추가학기 9학기로 복학해서 취업 준비를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3학점밖에 안 남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고용보험비를 돈도 얼마 받지 못하는 인턴사원에게 받아 가서 나중에는 혜택도 안 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상당히 안타까운 사례

라고 생각하는데요, 현행 법령상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피보험 기간 동안에 소정의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못 된 상태 요건을 판단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 대부분 인턴들이 6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 정부에서, 그것도 청와대에서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아니, 이런 데서도 일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처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3학점만 이수하면, 9학기 추가학기에 복학했습니다. 그래서 3학점만 이수하면 됐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요즘에 그런 대학생들 많습니까. 그렇지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이 뭐니까? 학생들 취업도 돕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상민 위원 많은 열린 취업이 될 수 있게끔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런 고용보험에 관련된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상민 위원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민 위원 지금 바로 이런 데서 아주 굉장한 근본적 밑바닥의 어떤 불만들과 불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뭐가 나오냐 하면 '불공정하다'라는 사회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장관님 답변을 봐도 '왜 저런 식으로 하시지?', 아니, 여당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퀘스레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 '왜 저를 싸잡아서 평가하십니까?'라고 해서 큰소리를 치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님의 근본적인 깊은 멘탈 안에는 성장도 좋지만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향한, 어디가 뚫어진 데

가 있고 빈구석이 있나라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 주셔야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정부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인턴들 고용보험에 가입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김상민 위원 빨리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 없잖아요. 가입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김상민 위원 청년인턴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법상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그거 왜 모르세요?

저는 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계속 3일 동안 알려 드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청년취업 한다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지금 대학생들이요 등록금만 못 내는 게 아니라 밥을 못 먹는 대학생들도 있어요. 취업하겠다고 스펙 비용으로 몇천만 원 써 가면서 해서 자기 끼니도 해결 못 하고 중·고등학교 때 무상급식 받았던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무상급식 돌봐주는 데가 없으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지금 인턴들에게서, 난리치는 대학생들에게 정부에서 이런 보험료 빼먹고, 처우도 안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과 대책도 없고, 장관님이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청년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고용과 노사관계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작은 하나하나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까, 장관님? 잘못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

○김상민 위원 아니, 이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게 대답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쿨하게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거 잘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하면 칭찬받으시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왜 그것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환노위 분위기

가 안 좋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지요.

○**김상민 위원** 왜 지금 저한테 또 시비 거세요? 이게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고 보세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장관님을 다 평가하거나 어떤 누구도 이거 가지고 장관님이 하신 일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로능력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행정부처의 지침이나 대통령령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근로능력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하면 이 부분에 다양한 형태로 이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고요.

장관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장관님이 업무적 수행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요즘에 청년·대학생층 문제는 단순히 20대의 문제, 어린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50대의 문제, 가정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입니다. 가족 단위 문제는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더 빈구석이 없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을수록 ‘아차,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성실하게 보이는 장관님의 모습을 보여 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관련 부처에 있는 분들 저희 의원실에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지금 저희 자리네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연 듣고 ‘가슴 아픕니다’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해결하는 자리예요. 장관님, 마음 아프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삶이 해결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조치를 취하고 하겠다라는, 제가 ‘몇 가지 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 주십시오’ 하면 ‘보내겠습니다. 이 부분 공감하니까 조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왜 말씀 못 하세요?

(김성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잘 살펴보고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저임금제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구도로 위원의 수가 어쩌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이전에 진짜 최저임금제로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들이 더욱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과정상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임금상승률, 경제발전율과 또 최저임금제의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이번 정부 들어서 부족한 게 또 사실입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일을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으니까 ‘살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최저임금위원회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상민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민주통합당 은수미입니다.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7월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쌍용차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그 사업장의 문제

는 해당 노사가 가장 잘 안다. 그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그 사업장의 노사다. 쌍용차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정치권, 국민, 정부는 그것이 잘 실천될 수 있게끔 지켜보고 응원해야 한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쌍용차 문제를 이해하시는, 적어도 주무 장관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가 좀 의심이 된다, 특히 그 사업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쌍용차 노사다라는 의식이 지금 쌍용차 현안과 관련해서 이게 맞는가를 지금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가급적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답을 말씀하지 말고 그냥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서 답변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제게는 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불을 약간만 꺼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나요? 쌍용차 파업에 대한 공권력 진압이었습니다. 최근 이 공권력 진압이 과잉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논란이 있다 이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권력 진압이 과잉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는 논란이 현재 현안으로서 쌍용차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일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스, 노’로 답할 성격이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 봤습니다. 현안으로서 쌍용차 문제에 포함됩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은수미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신 거지요?

○**은수미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공권력 운용의 주무 부처는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공권력 운용의 주무 부처로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요, 현안 파악을 하시는 주무 부처로서 이 현안에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즉 ‘저것을 고용부장관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라’ 이렇게 질문한 것 아닙니다. 현안에 포

합됩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은수미 위원** 쌍용차 문제 현안에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일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이 문제를 그러면 노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현안과……

○**은수미 위원** 쌍용차……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쌍용차 노사가 생각하는 현안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수미 위원** 노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대답을 ‘예, 아니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한 문제잖아요. 권력이 과잉진압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이 어쨌든 일부든 부분이든 전부든 장관님께서 ‘현안이다, 현안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현안에 대해서 쌍용차 노사가 잘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쌍용차 노조와 회사가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쌍용차 노사가 현안으로 해결할 수…… 남의 생각을 판단하고 추정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면 그냥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하기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현안 파악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지 ‘이것을 고용부가 해결할 거다.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쭙본 것 아닙니다.

적어도 주무 부처 장관이면 현안의 핵심과 그 본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파악을 하고 있으신 게 주무 부처의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쭙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신다, 혹은 답변을 안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22명의 영정이 있는 분향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2명이 돌아가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타살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쌍용차 현안에 포함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쌍용차 노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현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은수미 위원** 쌍용차 현안에 포함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쌍용차 현……

지금 한번 주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는 위원에게 재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예,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고요.

○**은수미 위원** 현안에 포함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 현재 쌍용차 노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과는 영향은 있지만……

○**은수미 위원**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핵심 현안은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핵심 현안인지 주변 현안인지 이런 것도 질문드리지 않았고요. 쌍용차 현안에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쌍용차 현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것이 사회적 타살이냐, 개인적 자살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이……”, 제가 해법에 대해서 여쭙 본 것도 아니고, 그 논란이 쌍용차 문제의 현안에 포함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은수미 위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다시 두 번째 회피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것은 현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장관께서 답변하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적절치 않은

생각입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지 않습니다.

○**은수미 위원** 현재 고용부장관께서는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추정에 따르면 ‘이것은 현안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단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고영한 판사께서 당시 쌍용차 회계 조작 문제와 관련한 파산부 법원의 부장판사였습니다. 파산법원의 부장판사로서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회계 조작과 관련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까지 모두 다 해고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껴안고 갔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겨주십시오, 그다음 장.

그 회계 조작에 대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채무자 회생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고용한 판사께서는 사기를 당하신 거다, 당시 법정관리 책임자들로부터’ 이런 종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계 조작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쌍용차 현안에 포함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은수미 위원** 쌍용차 현안에 포함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만 나와도 하실 수 있는 답변을 지금 안 하시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법 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묻고 계십니다.

○**은수미 위원** 이것이 회계 조작이다 아니다,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내용이죠.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도 있고, 아니냐라는 얘기도 이미 보도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런 논란 전체가 현재 쌍용차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현안에 포함되니까, 아닙니까?”라

고 여쭙 봤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O, X형으로만 답변을 하게 한다든지 질문을 주신 질문지 속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은수미 위원** 대답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초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왜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이런 사항으로 시간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수미 위원** 다시 좀……

○**위원장 신계륜** 예, 1분.

○**은수미 위원** 좀더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아시는가, 모르시시기를 고려해서 국회가 입법권과 관련한 사항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자체적으로 자기 입법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입법권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따지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법권은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토를 달지 마십시오. 저도 국민 앞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13쪽 보여 주십시오.

대답을 계속 회피하신 것으로 알고, ‘쌍용차 사태 마무리 관련 노동부 입장’ 2009년 8월 7일 언론 브리핑입니다.

‘그간 쌍용차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노사당사자는 물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주십시오.

‘더 이상은 큰 피해 없이 종료되어 다행임. 2. 그동안 노동조합이 폭력을 수반한 점거 농성 등 77일간의 불법 파업을 지속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움’

아시다시피 이때는 법원의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77일간의 불법 파업을 지속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동그라미 세 번째를 보시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임’ 이렇게 2009년 8월 7일 고용부의 언론 브리핑입니다.

이것이 현재 고용부의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2009년 것입니다. 제가 지금 2012년 현재

7월 26일 고용부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쌍용차 파업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수미 위원** 다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자, 마무리해 주세요.

○**은수미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09년 8월 7일에는 법원의 판결이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입장’ 이렇게 나온 건, ‘77일간의 불법 파업을 지속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움’ 이것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의 노동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노동부의 입장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것은 답변이……

잠깐만요! 멈추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울러 법원만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멈추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질의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상발언이나 소신 피력을 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노동부의 입장이나 아니냐, 이것만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못 다한 부분 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용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교 위원** 부산 남구울의 서용교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5년, 노무현 대통령 정부 5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 4년, 노동운동으로 관련된 구속자 수 내지는 기소자 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제가 받은 자료인데, 저도 법무

부에 다시 신청을 해 봤는데 확인을 한번 더 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자료로는 사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나 하면 김대중 대통령 정부 5년 동안에 총 885명이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5년간 1050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41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믿기지가 않아 가지고 법무부에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자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민주노총에서 나온 자료, 노무현 대통령 정부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체가 친노동자적이나, 반노동자적이나, 자료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만 단순히 놓고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 정부가 반노동자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국민들은 또는 많은 분들은 반노동자적인 노동정책을 펼쳐왔다고 생각을 할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이 정부가 결코 반노동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끔 그동안 복수노조 시행도 이 정부에 들어와서 된 사항이고요. 또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 친화적인 정부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심정입니다.

○서용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보내 주셨던 업무보고 자료들 죽 보면서 드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보기에—이것은 느낌입니다, 질문은 아니고—피고용자보다는 사측 입장, 또는 국민보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죽 만든 자료, 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또 질문하는 입법부의 상황을 보면 국민의 입장이라는 것을 느껴 줘야 되고 여기에는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적인 것들이, 숫자와 숫자 사이, 설명과 설명하는 단어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의 행정을 하는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 태도 가지고 장관님한테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그냥 정상적인 행정을 하시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담담하게 밝혀 주시면 특별히 문제 안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자초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져서, 이런 작은 데서 이런 데 작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 봤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 자료가 나오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서용교 위원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 노동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0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평균고용률이 의무고용노동률을 초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데이터를 보면 500인 미만 중소기업장이거나 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고용률을 대부분 다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의 기업장이라든지 계열사 포함한 30대 기업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이렇게 잘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조그마한 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그리고 특히 주요 기업의 경우에 장애인 고용증가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관리능력 차원에서는 더 나은 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고용을 더 하려는 의지가 좀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용교 위원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제가 그래서 주요 기업 CEO와 간담회도 수시로 갖고 또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장애인이 일할 경우에는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도 늘려 나가고 있고요,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하게 덜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를 하게 되는데, 명단 공표에 앞서서 얼마 이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공표가 될 수 있으니까 더 고용하자라는 당부도 굉장히 열성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조금씩은 개선이 돼서 대기업 이런 데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용교 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대체로 대기업이 다 벌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부담금을 많이 내는 사업장이 아직까지 대기업에 많습니다.

○**서용교 위원** 부담금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부담금을 강화한다든지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제도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명 덜 고용했다라고 해서 부담금을 산술적으로 한 명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 단가가 높아지게끔 그런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고용률이 낮은 경우에는 부담의 수준이 더 높아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대기업한테 그렇게 하기 전에 정부부처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외교통상부, 기상청, 특허청, 기획재정부는 고용률이 제로거든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공무원인 경우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하고 좀 다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처에서는 장애인 고용 수준이 낮다라는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다음에 16개 시·도교육청도 이게 다 미만이거든요. 의무고용률 미만인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모범을 보여야 되는 기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기관인 데 반해서 유독 장애인 고용은 각급 기관 가운데 교육청이 가장 낮습니다. 특히 경기라든지 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장애인 고용 수준이 낮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면이 있었지 않느냐 해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의지를 좀 가지게끔 하고, 특히 교사가 늘어날 수 있게끔 교육대학이라든지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장애인교사가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면서 또 교사가 아닌 여타의 근로자로서 종사

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늘어나도록 컨설팅을 포함해서 필요한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12페이지,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취업 지원’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취업 프로그램들을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율만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훈련실적 절대치만 나와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교육훈련 부분이 수요보다는 아무래도 좀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좀더 강화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게 최소한 의무고용률을 다 채울 만큼의 수치는 돼야 되지 않을까, 교육을 하는 대상에 있어서 단순비교 하기보다는 좀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특별히 교육훈련 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훈련 기회가 더욱더 늘어나도록 하겠고요. 현재 장애인공단에서 직장 장애인고용개발원,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의 훈련기관하고 연계해서 장애인이 더 많은 훈련을 받아서 원하는 일터를 갖도록 필요한 뒷바라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장애인도 능력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나요?

○**장하나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하나 위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8일에 93명의 생산직 노동자 분들께서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받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들은 평균 10년 이상 근속을 하셨고 IMF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상여금의 일부를 반납하셨고 또 3년 동안 임금 동결을 했었고, 이렇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다하고 애사

심을 가지고 오늘까지 근무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K2코리아라는 등산복 업체에 근무하시는 노동자 분들이십니다.

혹시 장관님께서도 K2코리아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우선 제가 K2코리아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를 전혀 동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K2코리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보고서인데요, 일단은 2010년은 2600억 정도 매출이었고 2011년에 3600억, 그래서 1000 이상의 매출 신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50억이 증가한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가 이분들에 대한 정리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도네시아나 개성공장, 행랑, 신발 AS, 의류 AS, 의류검사, 직영매장 판매직, 이런 데에 전환배치를 요구하면서 무리하게 아흔 세 분의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와 버금가는 이런 주장을 했던 것,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국내 생산부의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게 필연적으로 생산성 및 품질 경쟁력 저하와 생산비용 증대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현재 국내 인력수급 현황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생산공정 운영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런 이유로 이분들을 사실상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당기이익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정영훈이라는 사장은 2010년에 자본금이 25억인 회사에 74%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데, 2010년에는 75억, 300%의 배당금을 가져갔고요, 2011년에는 25억, 100% 배당금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를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긴박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너무 과도하게 배당금을 가져간 게 문제지 이 아흔세 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아주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전환배치를 사실상 받아들이라는 식의 판단을 내립니다.

노동전문가이신 장관님께서도 30년 이상 노동부에서 근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동부가, 지방노동회가 행한 조치나 아니면 이 경영자 정

영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K2코리아에서 경영상 해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 결과 3월 22일 날 경영상 해고계획을 철회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고용보장 방안들을 다시 수립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 문제는 사측에서 철회된 결과인 셈입니다.

○장하나 위원 철회되기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지난 4년간 국내 생산직 노동자 분들께 '절대 해고 또는 전환배치 없다, 본사에 있는 생산라인 2개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해고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함을 공감하고 있고, 저는 노동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이렇게 명백한 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자 분들은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에 본인들의 목소리가 전해질 기회가 너무 박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장관님이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영상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잠깐 보셨는데요, 공교롭게도 노동부가 지금까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달리 어제 이런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런 아흔세 분의 노동자를 정리해고를 했던, 아니면 사실상 정리해고에 가까운 전환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K2코리아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대 우수기업으로 노동부에 의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 바로 엇그제인데요, 귀사에 대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우대조치, 여기에는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면제, 이런 우대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철회한다는 공문이 어제 발송됩니다, 결정은 23일, 발송은 25일.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노동자들이 목놓아 외칠 때는 외면하다가 공교롭게도 노동부 업무보고가 있고 현안질의가 있는 오늘 바로 전날에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노동자 분들과 바라보는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점들

은, 그런 오해 살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데 위원님, K2코리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소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이런 정리하고 계획 자체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도를 죽 해 왔고요. 다만 작년도에 일자리가 많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바탕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됐는데 그러한 제한조치 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적극적이라고 하신다면 이후에 교섭에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는 정영훈 사장에 대해서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BR코리아라는 베스킨라빈스 제조업체를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업무보고 전날 졸속적인 조치가 아닌가, 면피성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그런 건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13면인데요, 고용부 산하 충주고용노동지청이 25일, 그러니까 어제지요, BR코리아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해 와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와서 조사하고 있다고 이런 언론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 건은 한 달 전에 있었던 고발 건이고, 아쉽게도 업무보고 전날에야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홍보성으로 바로 어제 알리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하여튼 공교롭게도 바로 어제서야 노동부가 과시성 브리핑을 한 것이 좀…… 억울하실지 모르나 저는 오해를 살 만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관님께서 노동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공장에 아이스크림 제조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는데, 소위 생산라인장이라고 하시는 지휘 감독을 하는 분하고 생산라인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생산직 노동자 분들이 소속된 회사가 다르다면 이것은 불법 파업이 아니겠습니까? 진성 도급일 수도 있습니까,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희산업, BR코리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20차례 이상 지도를 죽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사 당사자도 있고, 베스킨라빈스의 경우에는 또 모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관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심 갖고 있는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해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지 환노위 개최를 의식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불법 파견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소지가 있다면 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BR코리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의 할 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자의 노동권은 의무이자 권리로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최봉홍 위원 의무이자 권리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죽, 저도 전직이 노동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를 흘러 오면서 노사협조, 노사공존, 노사상생, 신뢰, 화합, 요새 형통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우리 노동자들은 그 당시의 법률을 가지고 악법이라 해 왔습니다. 군사정권 악법, 그다음 국보위 악법, 국민정부 때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 역시 악법, 그다음 또 악법 악법 해 왔습니다.

14년 6개월 만에 합의를 해 가지고 복수노조를 시행해서, 거기다가 노사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장관님의 말씀 그 법 역시 현지에서는 지금도 노동자들이 악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봉홍 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저는 한국노동법학회에다가 회장보고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이 우리나라 법을, 전부 노동법의 대가들이니까 학회에서 좀 맡아 가지고 정리해 줄 수 없나, 악법 소리 안 듣도록?’ 했더니 법학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수님 뜻 모으기가 노사정 합의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 자체는 보는 눈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틀립니다. 서양의 법은 300년, 400년 흘러오면서 실제 법령이 되어 있었던 것만 최소한의 한계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불문법적인 성문법, 관행·관례에 의해서 진행해 오고 있고, 관례도 역시 거기에 맞추어서 판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법을 현재로 말씀, 장관님 말씀대로 14년 6개월 동안 합의를 해서 노사정이 해왔기 때문에 진행해 나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는 눈에 따라서 정착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여러 가지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장관님도 우리나라 법이 우리 산업구조와 우리 국민성, 우리 생활습관, 역사에 맞추어서 새로 정비될 시기가 왔다고 안 봅니까?

필요가 있다고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도 방대하고 포괄적이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자유당 때 법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영미법, 일본법을 가지고 와서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산업 형태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 못 했습니다. 경제 개발 들어가면서 외국의 산별노조법을 가지고 와 시용했습니다. 국보위 나고 난 뒤에 다시 노조 너무 강해져서 약하게 해라, 기업별로 했습니다. 기업별로 하면서 200명당 1명의 전임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세월을 거쳐 오면서 지금의 전임자가 됐는데, 이번 법을 바꾸면서 민노총이 너무 많은 인원을 만드니까, 현대를 타깃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체가 쪼그라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 참여했던 노조운동을 하는 입들이 시끄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더 사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시끄러워졌는데, 저는 생각할 때 금방은, 전에

법을 만들 때는 전부 급조했습니다. 14년 6개월 합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합의 과정은 한 달 이내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해서.

그러나 이제는 다시 노동부가 시일을 두고 진짜 노동운동을 해 왔던 사람, 기업을 운영하는 분, 국회의원 그다음에 근로감독을 해 왔던 근로감독관들 이런 분들의 충의를 모아 가지고 법을 만들 그럴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행 노조법은……

○**최봉홍 위원** 금방은 안 될 겁니다, 2·3년 보통 보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오랜 기간 동안 깊이 있게 논의한 것이고요. 당장 막바지 단계에서 급조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에, 노사정위원회 의제별 위원회에서 수도 수차례 걸친 장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봉홍 위원** 저도 노사정위의 상무위원이고, 그 당시의 한국노총 간부로서 노총 위원장들보고 3년 전부터 협의를 했지만 아무도 안 응해 줬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 해서. 맨 마지막에 가서 급조된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세월을 두고 얘기하고요.

지금 경제민주화가 튀어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의 대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잃은 것은…… 만약에 재하청, 하청, 응찰시키는 사람이, 원청자가 100원을 내줬는데 그 중간 단계를 전부 거치다가 보니까 밑에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하다못해 한 50원 정도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50원은 불로소득자니 세금이니 다 가져가 버리고 실제 밑에는 10원, 20원이 안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보는데, 직업안정법 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에 보면 ‘어떠한 명목으로든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혹은 그 밖의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로 중간착취 조항입니다.

이 중간착취 조항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현행 법인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최봉홍 위원 그렇다면 현재 하청, 재하청 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뜯어먹는 불로소득자들, 거기 해당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이 사실상의 노동인지 아니면 민법상 허용된 도급인지……

○최봉홍 위원 그러면 또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아웃소싱, 소사장제를 도입한 자를 청와대에서 물류상을 주고 훈장을 주고 했습니다. 그분이 서울서 재판해서는 이겼는데 울산항에 가서 그 짓을 하다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바뀐 것이 용역제입니다. 아웃소싱, 소사장제는 사라지고 용역이 돼 가지고 노동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용역하는 등록업체가 지금 전국에 한 5000~6000개 되지요? 그 사람들이 적합한 이익을 봅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짚아내서 훑어가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전국에 산재돼 있는 인력회사들 혹은 파견·용역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지고, 과연 적정 이익을 보느냐? 그리고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돈의 흐름에서 노력한 만큼 받아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균형이 깨지니까 불공정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오만 얘기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직업안정법 32조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니 이런 문제를 엄밀하게 해 가지고 파견이면 파견, 안 그러면 하도급이면 하도급, 법률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형태가 하도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료직업소개소는 이름만 텅텅 놓고 바지사장 세워 가지고 온갖 짓 다 합니다. 그 문제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외국 같은 데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미국 같은 데 취업카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족, 중국 요족, 몽골리언, 인도네시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림동이나 봉천동 같은 데 인력시장 한

번 가 보십시오. 한국 사람이 도태되고 있습니다. 불법 취업자가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 법무부 쪽과 외교부 쪽하고 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처럼 취업카드라도 발부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의무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워킹맘이나 젊은 세대들이 직장보육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철저히 독려해서 가지고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징벌제를 만들든지 해서 철저히 시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임금체불 문제, 현재 임금체불 문제는 근저당권의 후속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불이 되고 나서 가 보면 재산 도피 다 시켜 버리고 찾아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공장, 물건 다 팔아 봐야 몇 푼 되지도 않고 노동부에서 팔아 봐야 빈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체불받는 노동자가 신고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우선변제조항을 근저당 앞으로, 근저당권 앞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가지고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부가 될 수 있도록 부락을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맨 처음 만들 때는 국세 다음 순으로 해 봤다가 지금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하고 청산자금을 만들어서 합니다만 아직까지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 앞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재산 도피 못 시킬 수 있도록 강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워낙 이 방면에 잘 아셔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직업소개 사업자들의 행위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용역업체 등록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최봉홍 위원 세무서에서 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최봉홍 위원** 남발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파견 업체는 저희들이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실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조금 더 필요한 조치를 더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채권 보장 관련해서 최종 3개월분에 대해서는 질권이나 저당권에 현재는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선하고 있는데……

○**최봉홍 위원** 3개월분만 아니라 6개월, 7개월 넘어가 해야 합니다, 원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런 한계가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는 명단공표제도를 만들 만큼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다라도 직장보육시설을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강화하도록 하고요.

(신계륜 위원장,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또 동포의 취업카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 우선적인 부여를 대전제로 해서 보충적으로 외국인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운영 과정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오늘 MBC 파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질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질타가 있을 때 저의 경우는, 제가 그때 여당의 장관이었는데요, 야당 분들이 야단을 많이 칠 때 그것을 대폭적으로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노위에 오세훈 위원님도 계셨는데 가장 많은 대안을 주시고 해서 그것을 많이 받아서 제가 정책에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긴장을 푸시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너무 정권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시고 ‘이런 나하고 다른 의견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열린 귀를 가지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초유의 언론사 파업 사태가 있었습니다. 방송 3사를 비롯해서 연합뉴스, 부산일보, 국민일보까지 포함해서 언론노조의 파업이 이어져서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언론사 파업을 하는 경우에 언론사도 힘들고 노동조합은 말할 것도 없는 상처와 무거운 짐을 안고 또 방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언론이 제대로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받는 불이익 이런 모든 것을 합친다면 이것은 상당히 국가 전체적인 손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서 한번 해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했던 언론사 파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에서 보실 때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회에서 장관의 답변 자세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저희가 모시기도 했고 또 행정부에서도 많이 일을 배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노조의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건 본질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사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공정방송, 사장 퇴진’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불법이라는 뜻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동조합법상 보호받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서는

이번의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유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를 밝히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개를 끄덕임)

○**한명숙 위원** 제가 제 생각을 좀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C 파업은 사실상 김재철 사장의 해임이 제일 앞에 나와서 상징적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MBC 노동조합이 김재철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 사람을 해임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공정방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방송을 막는 것이 김재철 사장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들고 나오면서 공정방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기자들이 모여 있는 기자회견가요, 자신들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열가지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라는 분들은 어쨌든 다양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공정한 뉴스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위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을 한번 보시면 “권력과 금욕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또 공정보도는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해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BC 단체협약에 보면, 공정방송을 별도로 하나의 장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3장의 20조와 21조에 보시면 “회사와 조합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정방송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또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내외의 어떤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 각 사의 사장은 방송의 최고 책임자로 공정방송 실현의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는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 장에

수록되어 있는 공정방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방송이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느냐? 그것을 한번 해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MBC의 김재철 사장은, 2011년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에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합의내용이 담긴 바로 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키려고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시도했었는데 여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계시는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도 있었고 또 노조 측의 압력에 그 뜻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노동조합이 김재철 사장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단체협약을, 같이 만든 조항을 파기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편파보도의 문제로 보도본부장에 대해서 보도국 기자들이 문제를 삼고 공정방송협회를 뒀는데 그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했어요. 이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사측이 의무적으로 이것을 응해야 됩니다, 이 회의에는.

그래서 거기 보면 단체협약 23조에 회사는 편성, 보도, 제작 관련 보직국장의 인사에 있어서 공정방송의 실현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명해야 돼요, 임명도. 그리고 24조에는 공정방송 협의회, 말하자면 공방협이지요. 이것을 두고 그 운영규정도 사측과 노조 측이 5 대 5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측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데 무조건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 불이행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단체협약을 어김으로써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처음에 사측이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도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측이 노조와 근로조건의 협의로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파업이 시작된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한번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왜 이것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은, 언론인들은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다

음에 다양성이 추구가 되어야 돼요. 다양성이 추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하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시청자들의 질타가 있으면 자기네들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상당히 이게 생산성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시청률이 하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광고를 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기회상실이 굉장히 불이익이 회사 측에도 오고 조합원에게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MBC 파업이 단지 사장을 몰아내겠다는 순수한 의도의 정치파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보면 단체협약을 못 지킴으로써 근로조건인 경제적 기회상실이 온다는…… 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기회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경제적 정치파업이라고 하지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MBC에 방문진이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장님 중에 김우룡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고 퇴직하시자마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철 사장께서 큰집에 불러가서……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다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MBC 좌파 대청소는 80% 정도 정리됐다, 내가 김재철 사장에게 청소부 역할을 하라고 하니깐 김재철 사장이 청소부 역할을 한 것이다, 좌파 인물을 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참 우리가 이런 사회에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언론의 보도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루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정권의 언론의 독립성이 말살되는 하나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공정보도를 위해서 단체협약을 파기시키려는 이 회사 측에 대항해서 말하자면 언론노조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권이나 행동권이나 또는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특별히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판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노동법 개정 반대파업은 순수한 정

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된다’라고 판시를 해서 ‘이것은 정치파업이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MBC 파업도, 저는 이 언론사들의 파업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장관님의 생각하고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언론사 파업이 있을 때 언론사 노동조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좀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영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MBC 단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공정방송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BC 노사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노조와도 심도 있는 대화도 꽤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법상 쟁의행위라고 하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협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단협의 이행 적용 등에 관한 다툼은 쟁의행위가 아니라 법원 등 사법적인 구제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지난번 MBC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들어갔을 때 판단한 결론을 보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지 않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등 같이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냥 한 말씀만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MBC 파업 문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입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단서를 여기서 지금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라도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정말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품격이 떨어진 품격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알권리,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정

하게 알권리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제대로 해석되고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위원장님께 좀 제안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는데요, 이번에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개최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환노위가 국가적 차원에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알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민주통합당 한정애입니다.

이채필 장관께서 정치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또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자꾸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에 통합이 됐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통합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국노총의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특정 정당에 간 분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려사항들을 말한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이, 아까 말씀하시던데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그 한국노총의 규약에 그 목적과 사업이 바뀐 게 있나요, 작년의 임시대의원대회를 끝으로? 정치를 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동조합이……

○**한정애 위원** 아니,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노총이 노총의 규약을 바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을 ‘예스, 노’로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한정애 위원** 규약과 관련한 사항이 변화가 있

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건데 그게 뭐 ‘예, 아니요’가 왜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규약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정당에 예속되게 되면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정애 위원** 노동조합이 정당에 예속됐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뭘 보고 예속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사항보다……

○**한정애 위원** 작년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어떤 식의 내용이 결의가 됐는지는 한번 보셨어요?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결의했는지는 보셨나요? 제대로 보셨습니까?

그것 보고 안 드렸습니까? 뒤에 국장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작년 노총 임시대의원대회 12월 8일 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뭘 하기로 했던 것을, 어떻게 결의됐는지 보고 안 했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권통합 정당의 참여 및 지지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까지 노동복지 담론에 있어서 실제 노동은 배척되어 왔거나 주변에 머무르는 상황으로 이는 기존 정당이 노동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노동을 정당의 주체로 세우지 못했던 문제에 기인한다. 노동부문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관료적 정책 결정이나 일부 엘리트 집단의 보고서만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비정규직·정리해고·청년실업 등 노동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노총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정치세력화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고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력화가 필요하다. 우리 노총의 야권통합정당에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 결의는 단기적으로는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조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산별현안을 당에 의제화하고 당론으로 추진 가능토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이익이 아닌 1600만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와 같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혜택은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결국 야권통합정당에의 참

여와 지지는 우리 노총이 국민과 함께 하는 대중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전환점으로 될 것이다.”

여기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원래 노동조합이 해야 되는, 총연맹이 해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을 했던 게 참여와 지지 결의예요, 참여와 지지 결의.

통합한다고 했습니까?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수임기구에 옵서버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 한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왜? 그동안 당이 공식적으로 노동부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노동부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정치적 발언을 하셔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정치적 발언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한정애 위원** 아니, 즉 정치적 발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정애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참여하고 지지한다라고 결정한 이후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듣기만 할까요?

○**한정애 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정치만 해야 되니까 정치만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규약을 바꾸자’라고 해서 노총이 규약을 바꿨습니까? 바꾼 게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아니, 이것은 아까도 물었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드릴까요?

○**한정애 위원** 노총이 규약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이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당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도 한국노총은 생기는 것입니다. 정당이 목적으로 하는 근본사항과 노동조합의 목적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장관님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도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아까 읽을 때 못 들으셨어요? 노동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노동과 관련된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이……

○**한정애 위원** 노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이 한국노총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요. 왜 정당에 가서……

○**한정애 위원** 노동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잘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국민과 함께 노사정 합의를 이룬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아까 이번 정권이,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왜…… ‘이 정권이 노조로부터 친노동자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듣는다.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끝장토론에 참석하셨지요? 여기 보니까 대통령,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고, 민을 대표해서는 경제 4단체하고 소속 경제연구소, 이익단체협회, 어쨌든 기업의 대변자들은 총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한 축인 노동계는 일체 배제됐지요. 혹시 국민노총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생각하는 민간에 노동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옥수수와 찢감자로 야식을 해 가면서까지 진행된 토론회 결과로 나온 게 뭐였습니까? ‘공공·민간 휴가 반드시 가기’ 캠페인인데,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기업주가 베푸는 시혜입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기업주를 불러다가 ‘휴가를 보낼시다’라고 해야지만 노동자들은 휴가를 갈 수 있는 겁니까? 휴가를 가는 주체인 노동자는 완전히 배제된 채 결정을 하면서……

이게 법적인 권리입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주는 시혜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한정애 위원** 이것은 하실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그 회의를 결론 내리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과 관련해서……

○**한정애 위원** 그 회의 내용 전체를 다 묻는 게 아니고, 이 결정만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지금 답변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안과 관련해서 휴가를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한정애 위원** 아니, 답변을 하라고 한 게, 제가 물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기업주가 베푸는 시혜적인 혜택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하지 말라는 거지요?

○**한정애 위원** 그것을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휴가를 제대로 가게끔 하자라는 사항 아닙니까?

○**한정애 위원** 아니, 휴가가 법적인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휴가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휴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형편상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법에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그러면 노사가 함께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위원** 가는 주체가 노동자 아닙니까?

○**홍영표 위원** 법적인 권리에 대해서 장관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한정애 위원** 법적인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신청을 하고 또 형편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정애 위원** 동문서답이 참 많으시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할 수 있게끔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홍영표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한정애 위원** 그리고 대통령이 노동3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7월 19일 날 있었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현대자동차 파업을 겨냥해

서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 한다.” 이렇게 단체행동권을 소득에 따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천박한 노동관이지요. 이게 국격을 손상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급여를 받으면 파업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도 지침이나 이런 것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뉴얼 좋아하시잖아요. ‘얼마 이상은 단체행동 하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의 발언이 대단히 제가 듣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 취지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고 유럽 재정위기 이런 경제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 한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보고 읽지 마시고, 누가 준 자료인지 모르지만 보고 읽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 한다’ 이러시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나름대로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요구 관철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다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협력업체 이런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계륜**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 한다고 하셨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일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산재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를 받으면 파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한정애 위원님, 요약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맥락으로 이해하시자 이런 말씀입니다.

○**한정애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말씀도 하시고 논쟁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목소리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사분사분 하시고요. 다 따질 것 따져 봅시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은 아까 답변 중에 한국노총과 민주당과의 통합을 사진과 함께 분명한 답변을 했는데 왜 조금 전에는,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 질의가 강력했습니다마는 답변이 흐릅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민주통합당과의 통합 지분 15%로 통합을 결정했다고 한국노총 산별대표자 회의와 중앙정치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회의에서 노총 지도부하고 통합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답변을 흐릅니까?

본 위원이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과 15% 지분참여 형식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당 대표최고위원이신 황우여 대표위원에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단체를 줄 세워서 안 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이 한국 노동운동 역사 66년 동안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요인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노동운동 조직률이 10%도 되지 않는 참담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양대 노총 지도부가 국민들과 조합원들로부터 사랑받는 노동조직이었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동조직률이 떨어지는 참담한 결과는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노동운동을, 10%도 되지 않는 노동운동의 지분을 가지고 전체 노동자의 이름을 대변하면서 노동운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바로잡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더군다나—지난주입니다—지난 7월 18일 날 대정부 정치 분야 첫째 날 질의에서 한국노총이 노동운동 본연의 단체로 되돌아가야 하고 기존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한국노총을 정치적으로 줄 세워서 안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을 노동부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제안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한국노총도 사랑하면서 국민을 대단히 멀리 보시는 견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노동운동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계승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많은 활동 중에 정치세력화 또 정치활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노동운동에 있어 가지고 정치는 하나의 수단이지 이게 결과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노동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 측면에서 내셔널센터, 그러니까 이런 내셔널센터가 정당에 통합된 노동조직이 세계노동운동사회에 그렇게 흔한 일입니까, 흔치 않은 일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개를 끄덕임)

○**김성태 위원**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답변을 해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흔치 않은 일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에 단결권, 정말 소중한 노동자들을 위한 헌법보장 사항입니다. 그중에 핵심이 바로 자주권이지요, 단결권의 핵심이 자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외국의 사례도,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통설과 판례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로부터의 독립도 자주성의 핵심요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더군다나 한국노총은 현재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상당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한국노총이라는 이런 내셔널단체 조직이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날짜에 그 사무처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전당대회장에서 투표행위를 한 그 자체가 제대로 된 노동운동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한국노총의 정치적 자율성을 특정 정치세력에 배타적으로 소속된 구성원으로 가두는 경직된 입장을 한국노총이 취함으로써

새누리당이나 기타 정당 그리고 정부에 대한 한국노총의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고립시키고 말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결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새누리당에서 상당한 노동 문제의 전문가로서 당 지도부에게 상당한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절대 노동운동 본연에 충실해야 될 노동단체를 정치권에 줄을 세우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우리 지도부에게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이 주문한 이유가 더 이상 정치권에 노동단체가 휘둘러서는 노동운동 본질이 사장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심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짧게 말씀드릴까요?

○**김성태 위원** 짧게 하세요. 그래야 내가 또 질문을 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장관,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서용교 위원님으로부터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많이 지적받고 대안에 대해서도 제시받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 답변에 상당히 때로는 지적도 많이 받으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편으로는 하고 문제 있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해 주세요.

저는 오늘 하나 제안하는 게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이 있습니다. 가령 영구 임대아파트나 저소득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에, 특히 장애인들이 어려운 거주 여건과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시범적으로 장애인일자리고용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니까, 전국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고요. 조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실행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것은 각 경제 주체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조화롭게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이 조건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근래 정치권이나 또 많은 언론에서도 이 경제의 민주화는 그냥 재벌 개혁이라는 아주 협소한 부분에만 치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시각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그리고 공정한 거래, 또 여기에서 빠지고 있는 게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로 눈을 돌려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볼 때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제주체 간에 잘 조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 진지한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앙꼬 없는 찐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노사관계 선진화다 뭐다 해 가지고 많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산업현장에 노사관계의 균형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상 건전한 노동운동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또 우리 사회를 균형 있게 갖춰나가는 데 건전한 노동운동의 이 가치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께서는 앞으로 경제 민주화 논의 과정에 그동안 위축되고, 특히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노조운동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잡으시면서도, 중요한 것은 진짜 노조운동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노조운동이 말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중점을 두시고 중소기업, 특히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 이런 어려운 근로 조건과 여건 속에서 정말 열악한 노동 조건을 지켜 나가는 그런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과 대체로 제 생각은 같다고 봅니다. 부족한 일자리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 간에 취약한 계층의 사정들을 좋게끔 하는 그런 문제

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근거에는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자주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면 조금 추가로 이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저 질의하고 마지막 답변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김성태 위원** 저는 한국노총은 산업화·민주화의 역사 속에서도 때로는 좌우 이념의 충돌 속에서도 온전한 대한민국을 지켜온 훌륭한 노동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도 각 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했던 실리 위주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책연대나 비판적 지지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한국노총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 세력들을 견제하거나 또 견인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서 조합원들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세와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노동운동단체였습니다.

한국노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동운동단체로서 바로 서고, 또 지금 현재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대립적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또 국민노총 그리고 각종 경제단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필요한 협력, 필요한 뒷바라지를 잘하고자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제가 한국노총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오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관련해서 상당히 제가 오해를 받는 듯한 상황인데요. 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결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을 생각도 없습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 정책연대, 정계 진출, 정치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제가 언급해 온 부분은 노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활동의 방식인 것입

니다. 그래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무 장관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정치 개입을 할 의사도 또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 개입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취지에서 정도를 지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 답변 과정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노사 문제,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예, 아니요’로만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나 입장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고, 또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하든 문제가 증폭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답변의 방식에까지 선택형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아, 계속할게요.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겠지만 갈 길이 머니까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좀 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신계륜** 잠깐만요.

장관님, 좀 쉬었다 할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생리 해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저는 조금 더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한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김성태 위원** 용변도 보고 해야 되니까……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들으시고……

○**한정애 위원** 저는 지금 장관의 저런 발언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주로 정치활동’, ‘주로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노총 문제는 한국노총 그 조직이 자주적인 단체기 때문에 노총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할 겁니다. 장관이 ‘감 놔라 배 놔라’, ‘주로 정치활동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그 자주적인 단체를 위해 주는 길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순서는 첫 번째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7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최종태 위원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좀 심심하실 것 같은데요.

사회가 다양화되고 양극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대화의 강조를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정작 위원장직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끼고 계시지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특히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그런 중앙단체로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노조가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데 노조대표들만 구성하고 있어서 특수형태 종사자나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 이렇게 다양하게 위원이 구성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지금 노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면서 우리 다원사회에 적합하게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해대표자들이 참석해 가지고 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법 개정안을 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면 당연히 추진하시고 시급히 법 개정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이나 특히 업종, 산별 차원에서 중층적 사회적 대화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

는데, 사실 예산이나 또 노동부와의 관계 이런 등등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할 계획이 계십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지금 노사정위 사회적 대화기구가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흡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계십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많이 부족합니다.

○**이완영 위원** 장관님, 많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끝으로 위원장님, 금년에 국제노사정기구연합 회의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예.

○**이완영 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 반영을 위해서 역할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특히 홍 위원님이 그때 협조를 해 주셔서 가지고를 2억을 받아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족하고 만약에 문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충분합니다.

○**이완영 위원** 충분합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11월 23일부터 24일간 이사회를 할 수 있는 데 대한 자금으로서 확보됐습니다.

○**이완영 위원** 고맙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오늘 지적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 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이번에 7개 노조에 대한 행정지도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7개 중에 5개는 확정절차를 노조가 안 거쳤고 2개는 사용자가 사실 공고를 안 해서 못해요. 알고 계십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2개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하여튼 지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고 3개는 사용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내용은 아시는 전제하에서 보면 조정업무 및 필수유지업무 매뉴얼, 조사관의 매뉴얼입니다, 복수노조 되고 나서. 단일화 절차가 우선은 노동조합 확정 그다음에 교섭대표노조 결정 그다음 교섭하고 그다음 조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조정 단계에서 중노위가 굳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를 거쳤느냐를 확인하는 것 때문에 지금 금속노조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만에 하나라도 다른 노조가 있지 않을까, 있으면 교섭한 후에 상당한 비용 손실이 있다 이런 취지인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중노위가 한가합니까? 그렇게 일이 없습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괜히 공무원들이 일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건강한 국민들을 전제로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만큼 절차가 왔단 말이에요. 노사 간에 서로 교섭까지 해 왔는데 그것을 다른 노조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법리 논쟁을 해야 되느냐, 그게 또 노동계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자꾸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이용한 노동조합 탄압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마당에 이런 절차를 왜 굳이 해야 됩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에, 노동쟁의라는 것은 권한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하다가 결렬되면……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요.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교섭권이 있는 노조가 결국 조정 신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노동조합이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대개 1사 1노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완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 아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뒤에 앉아 계신 간부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라고요. 저는 굳이 이 단계에서 다시 그런 초기단계까지 공무원들이 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우리는

단일노조다, 복수노조가 아니오’ 하고 자신 있게 했는데 나중에 다른 노조가 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교섭비용을 손해배상을 물리든지, 너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교섭대표노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들어왔다,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물리면 되지 굳이…… 저는 너무 앞서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지금 특히 산별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그런 오해를 줄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도 오랫동안 공무원을 해 봤지만 저 스스로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던진 것인데, 한번 제도개선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노조법에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노동부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행 노조법에는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 산별노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별 교섭을 하느냐 산별교섭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교섭 방식의 문제잖아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 단일화를 거쳐서 교섭권이 있는 노조가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그 상태가……

○이완영 위원 이미 사측도 인정해서 교섭해 온 상황이고 특히 그것은 노동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지금은……

○이완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노동부 문제가 아니라 조정업무 및 필수유지업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에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노동위원회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지요, 노동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도록 위원장님,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야만 바뀌지 노동부하교의 관련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그 부분은 법적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절차가 우리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일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

다 이런 취지입니다.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다른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활용해 가지고 공무원의 일을 줄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매뉴얼상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고쳐서 해야 되고 다만 법적인 판단하에, 그 기초하에서 매뉴얼도 수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보충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라면, 그 전제가 성립한다 그러면 굳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 안에 노조가 A, B, C 이렇게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한두 명, 지회, 지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단일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고 단협을 체결하고 나면 그 단협이 결과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지를 없애자라는 것이고……

○**이완영 위원**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이 그겁니다. ‘당신들 단일노조냐’ 그것을 구두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짓말을 하고 다른 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한다면 다른 제도를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전부 다 확정 절차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조가 반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가 장관님의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은 저는 100의 1%도 안 나올 것이라고 봐요.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하고,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장관님께서 이완영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홍영표 위원님입니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다른 여러 가지 노동현안이 많아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채필 장관님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생각이 심각하게 잘못돼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통합, 저는 통합이 용어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3권 그다음 정당법 또 노동조합법 이런 것에 만약에 그 통합이 저촉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새누리당에서 이 통합을 바라보는 것과 민주당 바라보는 것과 또 진보당이 바라보는 것, 아마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각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이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장관이 나서서 흡수통합이다, 예속통합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이 통합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속통합, 흡수통합, 사실과 다릅니다.

아무튼 그 자체도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명백히 한 정당, 새누리당의 편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집권 여당, 물론 이 MB 정권에서 국무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잘 보여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조합법상에 명백히 위배되는 그런 통합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해산명령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정당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통합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정당법상 이 통합은 해석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이 논쟁을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당과 정치세력과 서로 해석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주무장관으로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것은 명백히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노총 해산까지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과거에 지난번 대선 때 정책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손을 잡았을 때 저희 민주당 쪽에서, 아마 어느 당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노총의 자주적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니까 마치 정책연합과 다른 것처럼 이렇게 건강부회(牽強附會) 해서,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보면 굉장히 긴밀하게 조직적으로 결합이 됐습니다. 한국노총의 현직 간부들이 새누리당의 당직을 맡았었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알고 계세요? 장관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당시에 정책연합 이후에 한국노총의 간부직을 유지하면서 한나라당의 당직을 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간부들을 했습니다. 당직을 맡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아니, 그것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꺼번에 답변드릴까요?

○**홍영표 위원** 아니,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하세요. 본인의 그 빗나간 잘못된 소신이나 입장을 그렇게 선전하려고 하지 말고 답변을 하세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답변을……

○**홍영표 위원** 아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을 답변하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본질적인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나중에 드릴 테니까 우선은 그 사실을 아니까, 모릅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장관, 당신 여기서…… ‘당신’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관님의 그 빗나간 소신이나 입장만을 떠드는 자리가 국회가 아닙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과거에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정책연합을 했을 때 당시에 상당히 조직적으

로 결합이 됐다, 그 사례가 한국노총의 간부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한나라당의 당직을 가졌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과 연대는 다릅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해석이, 서로 그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장관님의 입장이 다르고 새누리당 입장이 다르고 우리 민주당 입장이 다르고 진보당의 입장이 다르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해석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객관적 팩트 하나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통합이라는 성격하고 연대라는 성격하고 다르기 때문 게 그 본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홍영표 위원** 아니,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니, 위원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하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할 사항을 답변해야지요.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데 아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되고 알면 ‘안다’고 하시고, 그것을 모아서 다음에 그 본질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 본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특정 정당과 노동조합 조직이 통합하는 것은 우려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홍영표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누가 무슨 직을 가지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영표 위원** 아니,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통합 지분을 가지고 통합 형태로 조직적 결합을 하는 것하고……

○**홍영표 위원**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요. 내가 당신의 잘못된 철학과 소신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니까! 답변을 하라고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홍영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말 이것은 장관께서……

○**위원장 신계륜** 잠깐만요, 고용노동부장관, 질의 내용이 ‘통합, 연대’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적이 있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답변 안 하세요.

아무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인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통합이나 연대나 의 본질적인 차이에 따라서 귀결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느냐고. 이 문제는 ‘아니다, 기다’만 답변하면 돼요.

○**홍영표 위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만 답변 하세요, 내가 안다 모른다. 그리고 끝나고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김성태 위원** 아니, 한국노총이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하고, 그것을 아예 밝히시면 되지……

○**홍영표 위원** 감사님이 좀 가만히……

아니,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 그 당시 한국노총의 간부들이 한국노총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직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통합이나 연대나의 판단은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래서 안단 말입니까, 모른다 말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다른 질의를 이어갈 테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무엇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제가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는 본질과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각각의 자주성을 지닌 조직 대 조직 간의 문제나 아니면 조직 안에 들어가서의 문제나 그것이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 본질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장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정확히 하면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김경협 위원** 그것을 왜 장관이 판단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자니까.

○**김경협 위원** 그게 본질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왜 대답 태도가 그래요!

○**홍영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의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홍 위원님, 일단 종료하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할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고 틀렸다고 말한 게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답변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요.

‘난 잘 모르겠다, 난 몰랐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알고 있다고 큰일 날 일도 없고 모른다고 해서 큰일 날 일도 없습니다. 왜 그것을 답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회의를 진행할 텐데요, 이 문제는 장관께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홍영표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사실을 묻는데 왜 해석하십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서로 다른 견해일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높게 거론되는 게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장

관님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한번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제가 설명할 기회는 드릴게요. 답변하시고 나서 장관의 소신을 설명할 기회는 충분히 드릴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자연인이 어느 자리에 가서 있는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신계륜** 잘 모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나 알았든 몰랐든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여태 결론 낸 게 아니고요. 모르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홍영표 위원**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마무리를 1분 안에 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모르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 말씀은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관계 또 한나라당과 한국노총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우리 민주당으로서 섭섭한 때도 있었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논쟁을 삼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장관께서 이것을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을, 그리고 장관께서도 아까 발언 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려가 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헌법의 노동3권, 노동조합법 아니면 정당법, 현행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사안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장관이 나서서 그렇게 정치 개입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신계륜**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요……

○**위원장 신계륜** 잠깐 기다려 보세요.

홍영표 위원 질의는 끝난 것이지요? 장관님, 아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짧게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의도가 없고요, 노조법을 운영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노동조합 조직이 원래의 본질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조활동과 주로 정치운동을 하

는 정당활동 간의 구분이 어려워져서 노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런 상황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요, 정부가 노동운동 조직에 재정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당과 일체화가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이 정당에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의 소임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홍영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성남 분당갑 새누리당 이종훈입니다.

저는 중앙노동위원회 정종수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별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야 모두 다 신경 쓰고 있고 법도 굉장히 강화된 법을 내곤 하는데 기업들이 정규직이 하는 업무와 비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자꾸 이렇게 직무분리를 하다 보니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판단하기 이전에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차별시정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중노위 공익위원 할 때 차별시정 심판에 들어가서 많이 느낀 건데 중노위에서 동종·유사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보다 완화된 그런 입장과 지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겠어요.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지금 저희 동종·유사업무 판단 기준은 사실은 이 그동안의 판정 사례하고 법원에서 내렸던 판결례, 이런 것들을 주로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 내지 중심적인 업무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이 동종·유사업무를 판단하고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게 실제 우리가 하는 대충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핵심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다른 요소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그건 동종·유사한 그런 업무다, 대충 이러

한……

○**이종훈 위원** 기존에 보면 유니폼이 다르다랄지, 업무는 거의 비슷한데 뭐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감독만 한다랄지 해 가지고—예전 얘기입니다—층이 다르다랄지 등등의 이유로 너무 좁게 해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차별시정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예전보다 점점 넓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중앙노동위원장 정중수**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교 대상자를 정할 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넓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중앙노동위원장 정중수** 지금도 적어도 비교대상자 문제를 너무나 엄격히 해석하면 차별시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차별시정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느냐 또 차별이 있었느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비교대상자부터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은 차별시정 활성화에 보탬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예, 그러면 여태까지 지침이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하고요. 관련해서 무슨 기준을 잡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해외 사례랄지, 관련 기준은 뭐를 근거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중앙노동위원장 정중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위원** 하나 더 여쭙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부당해고 심판을 하다 보면 지금 한국에 특수고용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도급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해지인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있었다, 따라서 계약해지가 해고다라는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점점 개인도급 근로자들이 많아지는데 중노위의 위원장으로서 이 근로자성 여부를 계속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앞으로 정책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정중수**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건 위원장 개인의 어떤 판단도 필요하지만……

○**이종훈 위원** 예,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중앙노동위원장 정중수**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위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하기도……

○**이종훈 위원** 아니, 도급과 파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급, 근로자로 인정, 이걸 말하는 거고요.

○**중앙노동위원장 정중수** 근로자성……

○**이종훈 위원** 예, 근로자성.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정중수 위원장님께 드리느냐면 현장에서 매번 사건을 접하시는 중노위가, 노동위원회가 그 현장에 바탕을 해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호 정책은 이런 식으로 뒀으면 좋겠다라는 걸 건의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노동부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따라하는 집행조직이 아니라, 그래야만 진정한 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에, 근로자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말씀해 주세요.

○**중앙노동위원장 정중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뭐라고 지금 피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노동위원회의 재결사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판결례가 많습니다. 대개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했더니 법원에 가서 이것이, 우리가 패소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공통분모를 좀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의 재결사례에서 나온 이런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법원에 갔더니 이런 요소로 보고 있더라'라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법원의 판결기준과 좀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고 관련해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요소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훈 위원** 만약 앞으로 노동위원회법을 개

정해서 노동위원회가 정책 수립의 기능까지 일부 가질 수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정종수** 예, 그런 부분은 결국은 아마 노동위원회가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을 노동위원회가 다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법 자체는.

지금도 노동부가 다루는 법을 노동위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독립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동위원회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훈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여기까지 진행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였다가 2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좀 불편을 참으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대답이 공자님 말씀이나 당연한 얘기 계속 되풀이하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한국노총의 민주당 참여의 공식적인 결정, 공식적인 위당은 야권 통합 과정에 참여한 것이고요, 법적으로는 정당과 노동조합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흡수통합이니 예속통합이니 이런 표현들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려는 지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님은 노총의 정치활동을 걱정하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걱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질문을 한 것 중에서 답변을 안 하신 부

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10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조 가입, 정당활동들을 방해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이 공문을 발송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산하 10개 기관이 이 교육을 실시했고, 이것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결정을 하였는데, 장관님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조금 비슷한 취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통보는 받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공직선거법 85조에 의한 위반은 아니고 담당공무원 개인의 부주의에 대한 주의 촉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공직선거법 85조는 아니고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다, 이런 통보는 받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9조 준수 촉구를 받았습니까.

○**김경협 위원** '위반'이라는 통보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 기억으로는 '준수 촉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시나 본데요. 제가 중앙선관위의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소속 산하기관의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지침을 시달하면서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10개 산하기관의 직원들에게 투표 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1만여 산하기관 직원에게 이를 교육하게 한 사실이 있는바, 이 같은 행위는 그 이유 및 경위 등이 어떠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귀부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금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9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읽어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김경협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는…… 제 질문을, 정확히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조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 그때 나간 사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이 보는 그런 자료로 포함된 것이다 보니까 85조에는 상관이 없지만 9조와 관련해서는 ‘준수 촉구’를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수 촉구’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9조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위반’이라는 통보는 못 받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받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 개인의 부주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 아…… 아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있다, 없다’ 대답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질문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 저한테 ‘있느냐, 없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해당 직원이 그런 주의 촉구를 받았습니까.

○**김경협 위원** 해당 직원이요?

수신자가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구요.

○**한명숙 위원** 받은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러세요.

○**김경협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전혀 ‘부주의’라는 문구 이런 것 없습니다.

○**은수미 위원** 자료를 달라고 그러세요.

○**김경협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9조 위반에 해당되는 이 통보를 못 받으셨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지금 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장관님은 인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협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사실을 장관님이 인정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먼저 질의하신 한국노동총의 정치운동 관련된 사안하고 이 사안은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다른 사안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산하기관에 보낸 공문 그리고 실시했던 교육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결정 통보를 받았는지를 물었고, 그것을 지금 인정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뭐 공직선거법 9조는 결면 다 걸리는 것이니까요.

○**김경협 위원** 결면 다 걸리는 것이니까 아무나 다 위반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뜻이지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반해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9조의 문제를 제기하면 9조는 항상 위반된다고 얘기한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법이 필요 없으시겠네요.

○**홍영표 위원**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김경협 위원** 진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은수미 위원** 모든 사람이 다 위반을 했다고요. 그러면 저기 계시는 모든 고용노동부 관리들은 다 위반을 하셨겠네요,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니, 선거 시기에 9조와 관련해서는 모두 다 ‘예스’라고 한다는 거지요.

○**은수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선거 시기에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모두 위반을 한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억지 말씀입니다.

○**은수미 위원** 억지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다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의 희망사항이지요.

○**김경협 위원** 잠깐만, 제가 현안 발언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노동부장관의 대단히 불성실하고 아주 불량한 답변 태도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전혀 그 태도에 대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한 다섯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주제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런 답변의 방식이 작전인지, 아주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의적으로 업무보고에 따른 현안질의를 방해하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시간 내지는 차수 변경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의 답변 태도가 정말 지나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한테 보낸 공문을 가지고, 정식 공문입니다.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감사담당관), 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9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9조를 ‘일반적으로 아무나 다 어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말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9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발표할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때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에는 어찌 보면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인데 이번에는 선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식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런데 당사자는 공직선거법 9조는 위반해도 되는 것처럼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떠드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저런 장관의 불량한 태도를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오. 정 안 되면 우리 결의로 장관을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의 답변을 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어겨도 된다’ 그런 답변을 국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최봉홍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봉홍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발언하십시오.

○**최봉홍 위원** 오늘 이 상임위원회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상임위가 되고 상임위는 그 해당 상임위의 국민적 업무를 다뤄야 하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주론이 나온 것이 한국노총의 통합 폐합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물론 확인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공문으로 제시해 가지고 본인하고 할 수 있는 얘기이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민생 문제 또 노동법 관계, 환경 관계 이것만, 오늘은 노동부니까 그 관계만 주로 다루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회가 해야 할 임무는 그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아 가지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정권 이제 다돼 가니까 슬슬 넘어가시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상당히 듣기 어색합니다. 물론 당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해야 할 의무는 있겠지만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정쟁 비슷하게 붙여 가지고 그런 소리까지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은 조금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우선 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본연의 목적을 하면서 그런 추한 꼴은 국민들한테 안 보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수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 위원님의 진정어린 말씀은 잘 압니다만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은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하게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여쭙었습니다. 그런데……

○**최봉홍 위원** 아까 얘기는 은 위원님 말씀이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

○**최봉홍 위원** 쌍용차 문제가 아니잖아요.

○**은수미 위원** 아니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차 문제를 여쭙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노총의 통합이나, 아니나라 든가 혹은 한국노총이라는 특별한 조직의 이름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다뤄질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그런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이채필 장관께서 심지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으로 지금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조차도, 속기록에도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9조면 누구나 걸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이것을 정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예의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최봉홍 위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말씀하십시오.

○**최봉홍 위원** 제가 아까 잠깐 다른 일로 나가는 바람에 쌍용차 문제를 말씀하신 은수미 위원님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은 뭐냐 하면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쟁 비슷한 그런 얘기들은 삼갔으면 싶은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저도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어떻게 했다 하는 그 문제는 저는 여기서 대두를 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최봉홍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노동부에서 노동부장관이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발송했던 공문과 시행했던 교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하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가, 법을 지켜서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이것이 정쟁이면 국회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이런 법을 위반하는 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고 누구든지 다 위반한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용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입니까? 나라의 기본적인 기강,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가장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이것을 정쟁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최봉홍 위원**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답변 주고받고는 하지 맙시다.

○**최봉홍 위원** 예, 됐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김성태 위원** 계속 의사진행발언만 할 거예요?

○**홍영표 위원** 아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9조는 걸면 아무나 다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반했으니 주의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식의, 공직선거법 9조는 어겨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장관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본인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가 싶은데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홍영표 위원** ‘9조는 걸면 아무나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위원장 신계륜**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한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에는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주의를 촉구한다’라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일단 85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9조 위반으로 답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그런 행위가 잘됐다는 겁니까, 못됐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있는 그대로 소개해 드린 겁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장관의 입장은 뭐니까? 잘한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85조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9조 위반은 잘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때 85조 위반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지금 85조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때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김경협 위원**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에 85조 위반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 제기했을 때 85조를 가지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저는 85조 얘기는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서는 본 적도 없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랬다는 뜻입니다.

○**김경협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문서에 의하면 9조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9조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 통보를 받았는지, 사실을 인정하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5조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누가 그것 물어봤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은 85조 위반 여부를 문제 제기를 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85조 위반은 아니고 9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9조 위반이다, 그러나 이 사항을 그 직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85조 위반을 누가 제기했습니까? 누가 제기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당시에……

○**홍영표 위원** 물어보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조 위반에 대해서 사실이나, 잘못됐느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지금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경위를 죽 설명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계륜** 위원님 여러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도 발언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들어오면서 몇몇 위원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까지 질의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이야 어쨌든 이것은 역사에 남는 기록이다. 그리고 후일 노동 관련 상임위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록을 다 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소신을 갖고 발언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두 분께 드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고 질의를 계속한다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20시53분 회의중지)

(2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계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안 피우던 담배를 몇 대를 피웠더니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지만 이게 참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왔고 아마 많은 보좌관들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답변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의 답변을 참 의아하게 들었습니다. 정략적 발언도 당에 따라 있을 수 있고, 뭐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공직선거법 9조 위반,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장관 본인이 아니더라도 통보하고 공무원과 산하 기관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를 내린 이 일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거 다 선거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한 장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계속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도 수장이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법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을 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미안하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여기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추후에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경협	김상민	김성태	서용교
신계륜	심상정	은수미	이완영
이종훈	장하나	최봉홍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청가 위원(1인)

주영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전문위원	이동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필
차관	이재갑
기획조정실장	전운배
고용정책실장	한창훈
노동정책실장	조재정
노동시장정책관	이재홍
인력수급정책관	이태희
직업능력정책관	박성희
고용평등정책관	신기창
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	박중길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공공노사정책관	시민석
정책기획관	김재훈
국제협력관	안경덕
대변인	김경선
감사관	황보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임무송
충북지방고용노동청장	김제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박화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장화익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송문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재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최종태
상임위원	엄현택
운영국장	최기동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정종수
사무처장	심경우
조정심판국장	박동국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성
상임위원	김영국